

자문회의 자료집

2008 국민법의식조사연구 제 1 차 자문회의

2008. 1. 22.

자문회의 일정

- ◇ 일 시 : 2008년 1월 22일(화) 16:00 ~ 18:00
-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 참 석 자 : 2008 국민법의식조사연구 원내 및 원외 자문위원
- ◇ 구 성

사회자 : 양 건 (한양대학교 법학과 교수)

(1) 2008 국민법의식조사연구 사업계획 보고(16:00-16:20)

이상운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세정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2) 국민법의식조사 예상 설문분야 및 설문문항 보고
(16:20-16:40)

이상운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세정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3) 국민법의식조사 조사방법론, 설문분야 및 문항 자문
(16:40-18:00)

(4) 만찬 : 18:00-20:00

목 차

【2008 국민법의식조사연구 사업계획】	7
【국민법의식조사 예상 설문분야 및 문항】	13
■ 국민법의식조사 조사방법론 · 설문분야 · 문항에 관한 자문	
◎ 2008 국민법의식조사연구 자문회의 의견 (김계홍)	41
◎ 2008 국민법의식조사 예상 설문분야 및 문항에 관한 자문 (김지영)	45
◎ 2008 국민법의식조사 예상 설문분야 및 문항에 관한 자문 (박복순)	49
◎ 2008 국민법의식조사 예상 설문분야 및 문항에 대한 자문의견 (박영철)	75
◎ 2008 국민 법의식 조사 연구 1차자문회의 자문내용 (안진)	81
◎ 2008 국민 법의식조사에 관한 자문사항 (양건)	85
◎ 2008 국민법의식조사 예상 설문분야 및 문항에 대한 자문의견 (이금옥)	87
◎ 2008 국민법의식조사연구 제1차 자문회의 토론문 (이진국)	115
◎ 2008 국민법의식조사 문항 초안에 대한 의견 (이철우)	117
◎ 2008 법의식조사 자문회의 - 토론문 (정상우)	121
◎ 2008 설문분야별 설문문항에 관한 의견 (정태호)	125
◎ 2008 국민법의식조사연구에 대한 의견서 (조상균)	153
◎ 2008 국민법의식조사연구 자문의견 (최환용)	157
◎ 2008 국민법의식조사 설문 항목에 대한 의견 (한영수)	155

【2008 국민법의식조사연구 사업계획】

■ 기본연구과제명

국민법의식조사연구(I) - 2008 국민법의식조사연구 -

■ 연구책임자

이상훈 · 이세정 부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추상적이고 일방적인 추론에 의하여 판단되어서는 안 되며, 보다 실증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함. 따라서 국민의 법의식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기초로 법령을 만들고, 집행할 때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이 가능할 것임
- 1991년, 1994년 국민법의식조사 이후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국민법의식의 변화양상을 검토하여 국민법의식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과학적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과거와 현재의 국민법의식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미래의 입법과 법집행의 중요한 분석과 참고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기초하여 일반국민에 대한 직접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통하여 일반국민의 준법의식의 고취, 법생활의 예측가능성과 법집행의 공정성 도모, 실질적·민주적 법치국가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함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 『국민법의식 조사 연구』 - 연구자(년도) : 한국법제연구원 (1991) - 연구목적 :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법의식 조사·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론조사 및 면접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의식조사를 위한 방법론 개발 - 조사내용에 대한 연구 및 분석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 『94 국민법의식조사연구』 - 연구자(년도) : 한국법제연구원 (1994) - 연구목적 :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법의식 조사·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론조사 및 면접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의식조사를 위한 방법론 개발 - 조사내용에 대한 연구 및 분석
본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에 이루어진 일반 국민에 대한 광범위한 법의식조사연구는 이미 10년 이상이 지난 만큼 새로운 조사방법론을 개발하여 법제실무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조사·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론조사 및 면접조사 - 법률인지도 및 이해도 조사 - 국내 워크샵 및 전문가 회의 개최 - 국제 워크샵 및 전문가 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의식조사를 위한 방법론 개발 - 조사내용에 대한 연구 및 분석 - 외국의 법의식조사연구와의 비교

■ 주요 연구내용

□ 한국인의 법의식과 그 특징

-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
- 국민의 법생활
(준법정식, 권리의식, 법의 사용능력, 분쟁의 해결방법 등)
- 법정립기관에 대한 태도
- 법집행기관에 대한 태도
- 현행법제에 대한 견해
- 법의식 조사방법론 관련 이론 연구
- 1991년 · 1994년 국민 법의식 조사 · 연구와의 비교
- 외국에서의 국민법의식조사와의 비교
- 법의식조사결과 활용방안 모색

■ 연구추진방법

- 국민 법의식 조사 · 연구 사업단 구성
 - 조사 · 연구의 체계화를 위하여 사업단 구성
 - 사업단의 주도 하에 조사팀, 분석팀 및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
 - 사업단 구성 시기 : 2008년 1월 중

【원내자문단 명단】

성 명	소 속	직 위	전 공
강현철	입법평가연구센터	연구위원	헌법
손희두	법제교류지원센터	연구위원	헌법

【2008 국민법의식조사연구 사업계획】

이순태	행정법제연구부	부연구위원	행정법
정상우	사회법제연구부	부연구위원	헌법
최환용	행정법제연구부	부연구위원	행정법

【 원외자문단 명단 】

성 명	소 속	직 위	전 공
김계홍	법제처	법제관	
한영수	법제처	법제관	
김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심리학
박영철	용인송담대학 법률실무과	교수	헌법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민법·가족법
안 진	전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사회학 (법사회학)
양 건	한양대학교 법학과	교수	헌법· 법사회학
윤기택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민법
이금옥	순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헌법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형법
이철우	연세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사회학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과	교수	헌법
조상균	전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노동법

※ 관련 부처 공무원 등 추가 예정

- 여론조사 및 면접조사
- 문헌조사 및 비교연구
- 국내워크샵 및 전문가회의 개최
 - 설문분야·문항 개발 및 조사방법론을 위한 워크샵 및 전문가회의 개최
 - 설문 분야·문항개발 및 설문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및 자문회의 개최(2회 : 1월 22일, 2월 중)
 - 조사방법론 관련 워크샵 개최(1회 : 2월 중)
 - 조사·분석을 위한 워크샵 및 전문가회의 개최
 - 설문분석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워크샵 및 전문가 회의(2회 : 7월, 8월 중)
- 국제워크샵 및 전문가회의 개최(2회)
 - 일본, 미국 등 선진 제외국의 법의식조사와 관련한 설문분야 및 문항개발방법론에 관한 워크샵(3월 중)
 - 설문 및 문항의 객관성·타당성 등 확보방안의 검토
 - 일본, 미국 등 법의식 관련 저명학자 및 전문가 초빙
 - 일본, 미국 등 선진 제외국의 법의식에 관한 기초이론 및 조사방법론에 관한 워크샵(3월 중)
 - 한국과 일본, 미국 등 선진 제외국의 법의식에 관한 이론과 실제의 비교분석
 - 조사·분석의 체계성 및 신뢰성 확보 방안의 검토

【2008 국민법의식조사연구 사업계획】

- 일본, 미국 등의 법의식국제비교연구회 등 관련 중요단체의 전문가 초빙
- 일본, 미국 등 선진 제외국의 법의식 관련 전문가 등과의 상호 의견교환(수시)

■ 기대효과

- 정확한 국민의 법의식조사연구를 통하여 향후 입법 및 법집행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법집행상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민의 법의식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입법과 제도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연구기간

2008. 01. 01. ~ 2008. 10. 31.

■ 연구예산(천원)

- 생략

국민법의식조사
예상 설문분야 및 문항

【국민법의식조사 예상 설문분야 및 문항】

■ 설문분야

- I. 사회변동과 가치관의 변화
- II.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
 - 1. 법에 대한 인상
 - 2. 법규범력의 좌표와 법의 존재가치에 대한 판단
 - 3. 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법의 선택
 - 4. 탈법행위자에 대한 평가
- III. 국민의 법생활
 - 1. 법생활과 법적 경험
 - 2. 준법정신과 권리의식
 - 3. 법의 사용능력과 분쟁의 해결방법
- IV. 법정립기관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태도
 - 1. 법정립기관에 대한 태도
 - 2. 법집행기관에 대한 태도
 - 3. 사법개혁에 대한 태도
- V. 현행 법제에 대한 견해
 - 1. 현실에 맞지 않는 법
 - 2. 정치관계법
 - 3. 노사관계법 위반의 책임 소재
 - 4. 환경오염의 규제방향

■ 설문분야별 설문문항

I. 사회변동과 가치관의 변화

1. 가족구조의 변화

- 귀하 가정의 경우 가족공동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1) 아버지(남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
- 2) 어머니(아내)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
- 3) 부모(부부)의 공동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
- 4) 가족 모두의 의사를 종합하여 이루어진다
- 5) 기타

2. 직장질서의 변화

- 직장의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한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무조건 들어준다
- 2) 가능한 한 들어준다
- 3) 가능한 한 거절한다
- 4) 무조건 거절한다

3. 여성의 지위 변화

-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그렇다
- 2) 그렇지 않다

나) 다음은 어떠한 경우에 여성이 가장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정치참여
- 2) 재산상속
- 3) 취업 및 승진
- 4) 가정에서의 역할
- 5) 기타

4. 여성의 법률상 지위 변화

-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법률상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그렇다
- 2) 그렇지 않다

나)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여성관련법 규정 자체의 미비 또는 결함
- 2) 여성의 권리의식 부족 또는 법생활의 불철저

【국민법의식조사 예상 설문분야 및 문항】

- 3) 남성의 이해 부족 또는 이기심 팽배
- 4) 남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
- 5) 기타

Ⅱ.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

1. 법에 대한 인상

- 귀하는 “법”이란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 1) 공평하다
- 2) 민주적이다
- 3) 엄격하다
- 4) 편파적이다
- 5) 권위적이다

- 귀하는 법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반드시 필요하다
- 2) 어느 정도 필요하다
- 3) 별로 필요하지 않다
- 4)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법규범력의 좌표와 법의 존재가치에 대한 판단

법규범력의 좌표

- 법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국가통치를 위하여
- 2) 사회질서유지를 위하여

- 3) 사회개혁을 위하여
- 4) 분쟁해결을 위하여
- 5) 범죄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 6)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 법의 존재가치에 대한 판단

- 만약 우리사회에서 법이 다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차라리 나을 것이다
- 2) 마찬가지일 것이다
- 3) 불편할 것이다
- 4) 사회가 전혀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3. 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법의 선택

-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해결합시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 1) 바람직하다
- 2) 합리적이다
- 3) 몰인정하다
- 4) 불쾌하다

4. 탈법행위자에 대한 평가

- “법을 어기면서도 잘 사는 사람은 대체로 능력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국민법의식조사 예상 설문분야 및 문항】

- 1) 전적으로 동의한다
- 2) 대체로 동의한다
-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Ⅲ. 국민의 법생활

1. 법생활과 법적 경험

법인지경로

- 귀하는 생활법률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 1) 신문이나 TV(인터넷)을 통해서
- 2) 주위 사람들로부터 듣고서
- 3) 책이나 잡지를 보고서
- 4) 학교에서 배워서
- 5) 사건을 겪고 나서
- 6) 정부홍보물을 보고서

법인지욕구

- 귀하는 신문에 실리는 법령에 관한 기사를 자세히 보십니까?

- 1) 자세히 본다
- 2) 대충 본다
- 3) 거의 보지 않는다
- 4) 전혀 보지 않는다

- 귀하는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행정관청의 민원상담실·법률구조공단·소비자보호단체 등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상담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1) 자주 있었다
 - 2) 한두 번 있었다
 - 3) 전혀 없었다

- 귀하는 고소장, 고발장 또는 행정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서류(진정서 등)와 같은 법률서류를 직접 작성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1) 고소장, 고발장을 직접 작성해 본 적이 있다
 - 2) 고소장이나 고발장은 아니더라도 민원서류를 직접 작성해 본 적이 있다
 - 3) 직접 작성해 보지는 않았으나, 다른 사람을 통해 작성해 본 적은 있다
 - 4) 작성할 일이 있었지만, 어려워서 작성하지 못했다
 - 5) 작성할 일이 전혀 없었다

- 귀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편드를 가입할 때) 보험계약서나 통장의 뒷면에 있는 규정(약관)을 보십니까?
 - 1) 자세히 본다
 - 2) 대충 본다
 - 3) 보지 않는다

- 귀하는 주택, 상가의 매매, 임대차 또는 일반상거래에 필요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약서를 검토하십니까?

【국민법의식조사 예상 설문분야 및 문항】

- 1) 매우 그렇다
- 2) 다소 그런 편이다
- 3) 별로 그렇지 않다
- 4) 전혀 그렇지 않다

- 법조문이나 법률용어가 딱딱하고 생소하여 어렵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 1) 그렇다
- 2) 그렇지 않다

법교육

- 다음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단계에서의 법교육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 귀하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법 교육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잘되고 있다
- 2) 대체로 잘되고 있다
- 3) 별로 되고 있지 않다
- 4) 전혀 되고 있지 않다

나) 귀하는 보다 적절한 법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부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조직에 대한 지식

- 2)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생활법규
- 3) 법을 사용하는 능력의 향상
- 4) 준법정신의 함양을 위한 올바른 인간상 정립
- 5) 기타

다) 귀하께서 학교교육을 통해서 배웠거나 현재 배우고 있는 법 관련 지식이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도움이 된다
- 2)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 3)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4)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 만약 귀하께서 법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생긴다면, 다음 중 어떤 분야를 가장 배우고 싶으십니까?

- 1)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헌법 분야
- 2) 부동산, 금융거래 등 민사 분야
- 3) 각종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 등 형사 분야
- 4)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률적 처리 분야
- 5)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노동·사회복지 분야
- 6) 건설·건축 관련 분야
- 7) 소득세·상속세 등 조세 분야
- 8) 전자상거래, 통신비밀보호 등 인터넷 관련 분야
- 9) 혼인, 상속 등 가족법 분야
- 10) 기타

□ 법적 경험

- 귀하는 금전관계로 소송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나의 권리실현을 위해서는 소송을 꺼릴 이유가 없다
- 2)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번거롭다
- 3) 법정에 서는 것은 그 자체가 불명예스럽다
- 4) 기타

- 귀하는 면·동사무소나 구청에 갈 경우 어떻게 해야 일이 잘 처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원칙대로 하면 된다
- 2) 무조건 잘 부탁한다고 해야 한다
- 3) 압력을 넣어야 한다
- 4) 적으나마 뇌물을 주어야 한다
- 5) 기타

- 귀하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상식적으로 살면 된다
- 2) 법대로만 하면 된다
- 3) 법과 관련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 4) 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한다
- 5) 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어겨야 한다

□ 법지식

- 귀하는 법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어렵다
- 2) 대체로 어렵다
- 3) 별로 어렵지 않다
- 4) 전혀 어렵지 않다

- 법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법률용어가 딱딱하고 생소해서
- 2) 법 내용이 실제 생활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아서
- 3) 법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없어서
- 4) 법에 무관심해서

- 귀하는 스스로 법에 관한 전반적 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잘 알고 있다
- 2) 어느 정도 아는 편이다
- 3) 그다지 잘 알지 못하는 편이다
- 4) 거의 모른다

- 현행 민법은 시집간 딸과 부모를 모시고 사는 아들 중 누가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 1) 시집간 딸

【국민법의식조사 예상 설문분야 및 문항】

- 2) 부모를 모시고 사는 아들
- 3) 똑같다
- 4) 잘 모르겠다

2. 준법정신과 권리의식

□ 준법정신

○ 준법질서

-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그렇다
- 2) 그렇지 않다

나)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 1) 법의 절차가 복잡하고 자주 바뀌니까
- 2) 법이 불공평하므로
- 3) 법의 집행의 집행이 엄격하지 못하므로
- 4)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 5) 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편리하므로

다) 다음 중 누가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정치인
- 2) 공무원
- 3) 법조인
- 4) 교육자

- 5) 기업인
- 6) 근로자
- 7) 종교인
- 8) 대학생
- 9) 농어민

라) 귀하께서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 1) 법을 잘 몰라서
- 2) 번거롭고 불편해서
- 3) 법을 지키지 않아서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 4) 법을 지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모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 5)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 6)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 사적 모임에서의 규칙 준수

- 다음은 동창회·계 등의 모임에서 회칙이나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 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 귀하가 가입한 동창회·계 등의 모임에서 회칙이나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 1) 그렇다
- 2) 그렇지 않다

나) 만약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법의식조사 예상 설문분야 및 문항】

- 1) 친한 사이라서
- 2) 벌칙이 약해서
- 3) 이익이 없어서
- 4) 생활이 바빠서
- 5) 기타

○ 분야별 법준수 정도

- 다음의 각 분야에서 법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정치분야
- 2) 행정분야
- 3) 경제계
- 4) 노사관계
- 5) 교육계
- 6) 교통질서
- 7) 행락질서

○ 고발정신

- 귀하가 무단횡단을 하거나 담배꽂초를 버리다 단속반에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 1) 법을 어겼으므로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
- 2) 재수가 없는 경우라고 생각한다
- 3)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으나 법적 처벌은 지나치다

- 만약 도둑이 이웃집 담을 넘는 것을 보았을 경우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당연히 신고한다
- 2) 경우에 따라 신고한다
- 3) 두려워서 신고하지 않는다
- 4) 귀찮아서 신고하지 않는다
- 5) 이웃과 합세하여 잡는다

○ 가장 시급히 퇴치하여야 할 범죄

-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퇴치하여야 할 범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

- 1) 부정부패
- 2) 탈세
- 3) 부동산투기사범
- 4) 환경사범
- 5) 경제사범
- 6) 기타

나)

- 1) 성폭행
- 2) 조직폭력배
- 3) 마약사범
- 4) 강·절도사범
- 5) 음주운전
- 6) 기타

다) 범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피해자 및 일반시민의 철저한 신고정신
- 2)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 3) 관계당국의 엄격한 법집행 및 처벌강화
- 4) 가정과 사회에서의 건전한 시민 교육
- 5) TV·신문 등 대중매체의 선도적 역할
- 6) 기타

□ 권리의식

- 만약 국민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악법도 법이니까 지킨다
- 2) 제재가 두려워서 지킨다
- 3) 적극적인 방법으로 시정을 요구한다
- 4) 악법이니까 지키지 않는다

- 불량품(전자제품, 식품 등)을 샀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한 번 산 것이니 어쩔 수 없다
- 2) 끝까지 따져서 바꿔온다
- 3)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한다
- 4) 재판을 하여 손해배상까지 받아낸다

- 만약 귀하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해주는 대로 만족한다
- 2) 치료비만 받는다
- 3)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까지 받는다
- 4) 고소하여 법대로 처리한다

3. 법의 사용능력 및 분쟁의 해결방법

법의 사용능력

- 만약 국민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악법도 법이니까 지킨다
- 2) 제재가 두려워서 지킨다
- 3) 적극적인 방법으로 시정을 요구한다
- 4) 악법이니까 지키지 않는다

- 귀댁의 자녀가 같은 또래의 아이들과 다투다가 상처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한다
- 2) 치료비를 받는다
- 3)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

분쟁의 해결방법

-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해결합시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 1) 바람직하다
- 2) 합리적이다

- 3) 몰인정하다
 - 4) 불쾌하다
- 만약 귀하의 가족 중 누가 사람을 때려서 경찰에 붙잡혀 갔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피해자나 그 가족을 만나 합의하겠다
 - 2) 검찰이나 경찰계통에 아는 사람을 찾는다
 - 3) 변호사를 찾아간다
 - 4) 법의 해결에 맡긴다

IV. 법정립기관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태도

1. 법정립기관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태도

-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 1) 법의 절차가 복잡하고 자주 바뀌니까
 - 2) 법이 불공평하므로
 - 3) 법의 집행의 집행이 엄격하지 못하므로
 - 4)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 5) 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편리하므로
- 다음 중 누가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정치인
 - 2) 공무원
 - 3) 법조인
 - 4) 교육자

- 5) 기업인
- 6) 근로자
- 7) 종교인
- 8) 대학생
- 9) 농어민

- 다음의 각 부분이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3)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가) 국회나 정부에서 법령을 만들 때				
나) 행정관청에서 법을 적용할 때				
다)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법을 적용할 때				
라) 검찰에서 법을 집행할 때				
마)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 국회의원이 만든 법은 국민인 우리가 만든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그렇다
- 2) 대체로 그렇다
- 3) 별로 그렇지 않다
- 4) 전혀 그렇지 않다

- 귀하는 면·동사무소나 구청에 갈 경우 어떻게 해야 일이 잘 처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원칙대로 하면 된다
- 2) 무조건 잘 부탁한다고 해야 한다
- 3) 압력을 넣어야 한다
- 4) 적으나마 뇌물을 주어야 한다
- 5) 기타

2. 사법개혁에 대한 태도

-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 2)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 3)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4)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국민의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바람직하다

- 2) 바람직하지 않다
- 이른바 “로스쿨” 도입과 관련하여 현행 법조인양성방식에 대하여 많은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귀하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현행방식유지(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선발)
 - 2) “로스쿨” 방식도입(대학교육을 통한 법조인선발)
 - 3) 기타

 - 2008년부터 일부 형사재판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배심제 재판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귀하는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반드시 필요하다
 - 2) 어느 정도 필요하다
 - 3) 별로 필요하지 않다
 - 4) 전혀 필요하지 않다

 - 만약 귀하께서 배심원으로 선발되어 참여 요청을 받는다면, 배심원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1) 있다
 - 2) 없다

 - 배심제 재판 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배심제에 대한 홍보

- 2) 국민들에 대한 법교육
- 3) 관련 제도의 정비
- 4) 법조계의 인식 전환
- 5) 기타

V. 현행 법제에 대한 견해

1. 현실에 맞지 않는 법

- 다음 중 가장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정치에 관한 법
- 2) 행정에 관한 법
- 3) 형사처벌에 관한 법
- 4) 경제에 관한 법
- 5) 조세에 관한 법
- 6) 노사관계에 관한 법
- 7) 농어촌에 관한 법
- 8) 친족상속에 관한 법
- 9) 기타

- 현행 민법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동성동본의 결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동성동본의 결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찬성한다
- 2) 현행 민법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그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
- 3) 한국적 전통으로 보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4) 자식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2. 정치관계법

3. 노사관계법 위반의 책임 소재

-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노사관계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 요즘 노사관계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 3) 별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 4) 전혀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나) 노사관계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사용자
- 2) 근로자
- 3) 정부
- 4)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4. 환경오염의 규제방향

- 귀하는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기업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환경오염의 방지 및 복구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켜야 한다
- 2) 벌금보다는 징역 등 체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국민법의식조사 예상 설문분야 및 문항】

- 3) 규제보다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치중하여야 한다
- 4) 기타

국민법의식조사 조사방법론 ·
설문분야 · 문항에 관한 자문

2008 국민법 의식조사연구 자문회의 의견

김 계 홍
(법제처 법제관)

1. 국민법 의식조사의 사업방향

- 한국법제연구원의 그간의 국민법 의식조사(1991년, 1994년 등) 외에 다른 기관에서 행하여진 조사가 많은 바, 그간의 선행연구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같은 문항에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답변이 주를 이룬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어떠한 정책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인가, 즉, 단순히 결과를 분석하는데 멈추지 말고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의 탐색에 연구의 중점이 맞추어 져야 조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임.

선행연구의 예 : 법무부 2005년 법의식 실태자료조사, 2006년 국민여론설문조사(1703명 정책고객대상), 국정홍보처(법무부공동) 법의식에 대한 일반국민과 청소년 의식조사보고서(2007년 10월), 법교육강화를 위한 국민법 의식 실태결과보고서

법무부의 제시대안 : 국내 최초의 법체험 테마파크인 ‘한국법문화진흥센터’를 설립하고, 다양한 계층에 맞는 맞춤형 법교육 교재를 발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법률 콘서트’ ‘청소년 법고을 학당’과 같은 프

로그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법교육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

- 세월의 흐름에 따라 트렌드의 변화가 감지되는 분야 또는 문항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과 조사 당시의 새로운 분야에 대한 조사분야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법제에 대한 의견이라는 막연한 항목보다는 조사당시의 입법관련 민감한 사안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
예) 입법관련 : 대운하의 필요성 및 특별법의 필요성, 사형제도의 폐지(사형폐지국)에 대한 견해 등
법집행관련 : police line의 엄격적용방침, 알권리와 피의자의 인권보호 등
- 일부분항은 지문을 늘려서 복수답변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

2. 조사항목관련

- 법의 필요성(6페이지)에 대한 답변항목은 현대사회의 급부행정분야, 사회안전망구축 등에 관한 지문이 없고 전통적인 법의 역할만을 강조하거나 지나치게 추상적임. 지문을 늘려 중복답변 가능하도록 할 필요
- 8페이지 : 생활법률관련해서는 연계질문구성이 필요
예) 생활법률의 인식필요성, 주요습득채널, 기존의 습득채널을 통한 정보의 충분성, 상세 생활법령의 습득의지, 습득의 장의 필요성, 추가 채널의 참여의지 등
- 법령용어의 난해성과 관련하여 법령용어를 한글전용으로 하는 것과 한자를 병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을 필요성

- 14페이지 법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에 법의 내용이 어려워서라는 항목을 추가하고, 이를 입법, 집행, 적용과정으로 나누어 봄이 어떨지
- 현행법제에 대한 견해는 분야를 특정하여 밀도있게 설문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입법현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
- 배심원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므로 참여요청이 아니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거부할 수 있으므로 배심원관련 문항은 부적절
- 법의식조사인 만큼 정확한 용어를 구사할 필요성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로, 법의 입법, 집행, 적용의 구분명확화

2008 국민법의식조사 예상 설문분야 및 문항에 관한 자문

김 지 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설문의 전반적 구성의 문제

1. 이 설문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첫째 가치관, 둘째 법의식, 셋째 현행 법제 및 사법개혁에 대한 태도, 때문에 사법개혁에 대한 태도는 현행 법제에 대한 의견과 함께 구성하는 것이 좋을 듯 함.
2. 법의식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하는 것이 좋을 듯함. 첫째,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법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 우리사회의 법집행기관에 대한 신뢰, 준법의식, 탈법의 이유, 법사용(고소, 고발, 소송 등)에 대한 태도, 스스로 법을 잘 알고, 유사시 법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효능감)+둘째, 법경험(법교육경험, 실제 법을 얼마나 잘 아는지, 일상적으로 법과 관련된 문제들에서 법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3. 전반적으로 질문의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고 선택지도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음

□ 구체적인 설문 문항의 문제

1. I 사회변동 및 가치관

사회변동과 가치관 설문 문항이 두 가지 모두를 측정하는데 충분치 않음. 설문의 목적상 가치관을 알고자 하는 것이 이 부분의 목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추가될 수 있음. 개인주의 - 집단주의, 탈권위주의, 남녀평등의식 등의 차원들, 이러한 차원이 들어간 설문이 몇가지 더 추가되는 것이 필요

2. II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

- 이 부분에 법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 우리 사회의 법집행기관에 대한 신뢰, 법사용(고소, 고발)에 대한 감정, 유사시 법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효능감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듯. 때문에 p. 20-23 ‘법정립 기관 및 법집행 기관에 대한 태도’를 여기에 삽입하는 것이 좋을 듯함.
- 질문이 추상적임.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할 것 예를 들어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법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p. 13의 법지식에서 1-3번 문항이 이 부분에 삽입되는 것이 좋을 듯함. 아울러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귀하께서는 얼마나 잘 이에 대응하실 수 있습니까?’의 문항을 추가하여 응답자 스스로가 생각하는 법과의 거리감, 법에 관한 지식의 정도, 법사용에 대한 효능감을 질문하는 것이 필요할 듯
- p. 19의 1번 문항은 법사용에 대한 감정이므로 이 부분에 삽입하는 것이 좋을 듯 함.
- p. 12의 법적경험은 2-3번은 준법의식과 관련된 것으로 이 부분에 넣는 것이 좋을 듯.

- p.14의 준법정신에 관한 질문도 여기에 구성하는 것이 좋을 듯함.

3. III 국민의 법생활

- 법교육경험, 실제 법을 얼마나 잘 아는지, 일상적으로 법과 관련된 문제들에서 법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등.
- p. 14의 ○준법질서의 다) 문항은 ‘II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듯함. 라) 탈법의 이유도 ‘II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4. IV 법정립기관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태도

- ‘II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와 합치는 것이 좋을 듯함.
- ‘2. 사법개혁에 대한 태도’는 마지막 ‘V 현행법제’에 대한 태도와 같이 구성하는 것이 좋을 듯함. ‘법조일원화제도’에 관한 질문도 추가.
- ‘2. 사법개혁에 대한 태도’에서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 질문은 ‘II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에 추가될 내용으로 보임.
- 로스쿨 제도와 배심원 제도에 관한 질문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제도 자체에 대한 얼마나 알고 있는지 - 자세히 알고 있다, 대강 알고 있다, 전혀 모른다 등’ 배심원 제도의 문제점 - 학연, 지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등

5. V 현행법제에 대한 견해

- 일반인들이 응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많음

6. 사회인구학적 특성 질문할 것

2008 국민법의식조사 예상 설문분야 및 문항에 관한 자문

박 복 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설문분야

- I. 사회변동과 가치관의 변화
- II.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
 - 1. 법에 대한 인상
 - 2. 법규범력의 좌표와 법의 존재가치에 대한 판단
 - 3. 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법의 선택
 - 4. 탈법행위자에 대한 평가
- III. 국민의 법생활
 - 1. 법생활과 법적 경험
 - 2. 준법정신과 권리의식
 - 3. 법의 사용능력과 분쟁의 해결방법
- IV. 법정립기관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태도
 - 1. 법정립기관에 대한 태도
 - 2. 법집행기관에 대한 태도
 - 3. 사법개혁에 대한 태도
- V. 현행 법제에 대한 견해
 - 1. 현실에 맞지 않는 법

2. 정치관계법
3. 노사관계법 위반의 책임 소재
4. 환경오염의 규제방향

■ 설문분야별 설문문항

I. 사회변동과 가치관의 변화

1. 가족구조의 변화

- 귀하 가정의 경우 가족공동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1) 아버지(남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
- 2) 어머니(아내)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
- 3) 부모(부부)의 공동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
- 4) 가족 모두의 의사를 종합하여 이루어진다
- 5) 기타

** 가족내 의사결정 과정과 가족구조의 변화는 연관성이 부족함.

2. 직장질서의 변화

- 직장의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한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무조건 들어준다
- 2) 가능한 한 들어준다
- 3) 가능한 한 거절한다
- 4) 무조건 거절한다

3. 여성의 지위 변화

-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그렇다
- 2) 그렇지 않다

나) 다음은 어떠한 경우에 여성이 가장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정치참여
- 2) 재산상속
- 3) 취업 및 승진
- 4) 가정에서의 역할
- 5) 기타

4. 여성의 법률상 지위 변화

-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법률상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그렇다
- 2) 그렇지 않다

나)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여성관련법 규정 자체의 미비 또는 결함

- 2) 여성의 권리의식 부족 또는 법생활의 불철저
 - 3) 남성의 이해 부족 또는 이기심 팽배
 - 4) 남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
 - 5) 기타
- 3) “남성이 중심이 된 법 제정 및 집행”이 어떨지?

Ⅱ.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

1. 법에 대한 인상

- 귀하는 “법”이란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 1) 공평하다
- 2) 민주적이다
- 3) 엄격하다
- 4) 편파적이다
- 5) 권위적이다

- 귀하는 법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반드시 필요하다
- 2) 어느 정도 필요하다
- 3) 별로 필요하지 않다
- 4)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법규범력의 좌표와 법의 존재가치에 대한 판단

법규범력의 좌표

- 법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국가통치를 위하여
- 2) 사회질서유지를 위하여
- 3) 사회개혁을 위하여
- 4) 분쟁해결을 위하여
- 5) 범죄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 6)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의 존재가치에 대한 판단

- 만약 우리사회에서 법이 다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차라리 나을 것이다
- 2)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 3) 불편할 것이다
- 4) 사회가 전혀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3. 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법의 선택

-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해결합시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 1) 바람직하다
- 2) 합리적이다
- 3) 몰인정하다
- 4) 불쾌하다

4. 탈법행위자에 대한 평가

- “법을 어기면서도 잘 사는 사람은 대체로 능력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 1) 전적으로 동의한다
- 2) 대체로 동의한다
-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Ⅲ. 국민의 법생활

1. 법생활과 법적 경험

법인지경로

- 귀하는 생활법률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 1) 신문이나 TV(인터넷)을 통해서
- 2) 주위 사람들로부터 듣고서
- 3) 책이나 잡지를 보고서
- 4) 학교에서 배워서
- 5) 사건을 겪고 나서
- 6) 정부홍보물을 보고서

법인지욕구

- 귀하는 신문에 실리는 법령에 관한 기사를 자세히 보십니까?

- 1) 자세히 본다

- 2) 대충 본다
 - 3) 거의 보지 않는다
 - 4) 전혀 보지 않는다
- 귀하는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행정관청의 민원상담실 · 법률구조공단 · 소비자보호단체 등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상담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1) 자주 있었다
 - 2) 한두 번 있었다
 - 3) 전혀 없었다
- 귀하는 고소장, 고발장 또는 행정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서류(진정서 등)와 같은 법률서류를 직접 작성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1) 고소장, 고발장을 직접 작성해 본 적이 있다
 - 2) 고소장이나 고발장은 아니더라도 민원서류를 직접 작성해 본 적이 있다
 - 3) 직접 작성해 보지는 않았으나, 다른 사람을 통해 작성해 본 적은 있다
 - 4) 작성할 일이 있었지만, 어려워서 작성하지 못했다
 - 5) 작성할 일이 전혀 없었다
- 귀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펀드를 가입할 때) 보험계약서나 통장의 뒷면에 있는 규정(약관)을 보십니까?
- 1) 자세히 본다
 - 2) 대충 본다

3) 보지 않는다

- 귀하는 주택, 상가의 매매, 임대차 또는 일반상거래에 필요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약서를 검토하십니까?

- 1) 매우 그렇다
- 2) 다소 그런 편이다
- 3) 별로 그렇지 않다
- 4) 전혀 그렇지 않다

- 법조문이나 법률용어가 딱딱하고 생소하여 어렵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 1) 그렇다
- 2) 그렇지 않다

법교육

- 다음은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교육단계에서의 법교육에 대한 물음입니다.

- 가) 귀하는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법 교육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잘되고 있다
- 2) 대체로 잘되고 있다
- 3) 별로 되고 있지 않다
- 4) 전혀 되고 있지 않다

나) 귀하는 보다 적절한 법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부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국민의 권리 · 의무와 국가조직에 대한 지식
- 2)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생활법규
- 3) 법을 사용하는 능력의 향상
- 4) 준법정신의 함양을 위한 올바른 인간상 정립
- 5) 기타

다) 귀하께서 학교교육을 통해서 배웠거나 현재 배우고 있는 법 관련 지식이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도움이 된다
- 2)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 3)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4)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 만약 귀하께서 법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생긴다면, 다음 중 어떤 분야를 가장 배우고 싶으십니까?

- 1) 국민의 권리 · 의무에 관한 헌법 분야
- 2) 부동산, 금융거래 등 민사 분야
- 3) 각종 범죄에 대한 고소 · 고발 등 형사 분야
- 4)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률적 처리 분야
- 5)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노동 · 사회복지 분야
- 6) 건설 · 건축 관련 분야
- 7) 소득세 · 상속세 등 조세 분야

- 8) 전자상거래, 통신비밀보호 등 인터넷 관련 분야
- 9) 혼인, 상속 등 가족법 분야
- 10) 기타

법적 경험

- 귀하는 금전관계로 소송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나의 권리실현을 위해서는 소송을 꺼릴 이유가 없다
- 2)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번거롭다
- 3) 법정에 서는 것은 그 자체가 불명예스럽다
- 4) 기타

- 귀하는 먼·동사무소나 구청에 갈 경우 어떻게 해야 일이 잘 처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원칙대로 하면 된다
- 2) 무조건 잘 부탁한다고 해야 한다
- 3) 압력을 넣어야 한다
- 4) 적으나마 뇌물을 주어야 한다
- 5) 기타

- 귀하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상식적으로 살면 된다
- 2) 법대로만 하면 된다
- 3) 법과 관련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 4) 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한다

5) 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어겨야 한다

법지식

- 귀하는 법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어렵다
- 2) 대체로 어렵다
- 3) 별로 어렵지 않다
- 4) 전혀 어렵지 않다

- 법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법률용어가 딱딱하고 생소해서
- 2) 법 내용이 실제 생활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아서
- 3) 법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없어서
- 4) 법에 무관심해서

- 귀하는 스스로 법에 관한 전반적 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잘 알고 있다
- 2) 어느 정도 아는 편이다
- 3) 그다지 잘 알지 못하는 편이다
- 4) 거의 모른다

- 현행 민법은 시집간 딸과 부모를 모시고 사는 아들 중 누가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 1) 시집간 딸

- 2) 부모를 모시고 사는 아들
- 3) 똑같다
- 4) 잘 모르겠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좋겠습니다.
상속분의 남녀 간의 차이를 없앤 것은 94년 법의식조사 당시
부각되었던 내용임.

가령, 올해부터는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선택할 수 있
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성은 언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까?

- 1) 혼인신고시
- 2) 첫 자녀 출생신고시
- 3) 자녀 출생신고시마다
- 4) 잘 모르겠다

2. 준법정신과 권리의식

준법정신

○ 준법질서

-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그렇다
- 2) 그렇지 않다

나)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 1) 법의 절차가 복잡하고 자주 바뀌니까
- 2) 법이 불공평하므로
- 3) 법의 집행의 집행이 엄격하지 못하므로 (오자)
- 4)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 5) 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편리하므로

다) 다음 중 누가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정치인
- 2) 공무원
- 3) 법조인
- 4) 교육자
- 5) 기업인
- 6) 근로자
- 7) 종교인
- 8) 대학생
- 9) 농어민

라) 귀하께서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 1) 법을 잘 몰라서
- 2) 번거롭고 불편해서
- 3) 법을 지키지 않아서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 4) 법을 지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모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 5)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 6)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 사적 모임에서의 규칙 준수

- 다음은 동창회·계 등의 모임에서 회칙이나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 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 귀하가 가입한 동창회·계 등의 모임에서 회칙이나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 1) 그렇다
- 2) 그렇지 않다

나) 만약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친한 사이라서
- 2) 벌칙이 약해서
- 3) 이익이 없어서
- 4) 생활이 바빠서
- 5) 기타

○ 분야별 법준수 정도

- 다음의 각 분야에서 법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정치분야
- 2) 행정분야

- 3) 경제계 (분야)
- 4) 노사관계
- 5) 교육계 (분야)
- 6) 교통질서
- 7) 행락질서

○ 고발정신

- 귀하가 무단횡단을 하거나 담배꽂초를 버리다 단속반에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 1) 법을 어겼으므로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
- 2) 재수가 없는 경우라고 생각한다
- 3)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으나 법적 처벌은 지나치다

- 만약 도둑이 이웃집 담을 넘는 것을 보았을 경우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당연히 신고한다
- 2) 경우에 따라 신고한다
- 3) 두려워서 신고하지 않는다
- 4) 귀찮아서 신고하지 않는다
- 5) 이웃과 합세하여 잡는다

○ 가장 시급히 퇴치하여야 할 범죄

-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퇴치하여야 할 범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

- 1) 부정부패
- 2) 탈세
- 3) 부동산투기사범
- 4) 환경사범
- 5) 경제사범
- 6) 기타

나)

- 1) 성폭행
- 2) 조직폭력배
- 3) 마약사범
- 4) 강·절도사범
- 5) 음주운전
- 6) 기타

다) 범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피해자 및 일반시민의 철저한 신고정신
- 2)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 3) 관계당국의 엄격한 법집행 및 처벌강화
- 4) 가정과 사회에서의 건전한 시민 교육
- 5) TV·신문 등 대중매체의 선도적 역할
- 6) 기타

□ 권리의식

- 만약 국민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악법도 법이니까 지킨다
- 2) 제재가 두려워서 지킨다
- 3) 적극적인 방법으로 시정을 요구한다
- 4) 악법이니까 지키지 않는다

- 불량품(전자제품, 식품 등)을 샀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한 번 산 것이니 어쩔 수 없다
- 2) 끝까지 따져서 바꿔온다
- 3)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한다
- 4) 재판을 하여 손해배상까지 받아낸다

- 만약 귀하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해주는 대로 만족한다
- 2) 치료비만 받는다
- 3)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까지 받는다
- 4) 고소하여 법대로 처리한다

3. 법의 사용능력 및 분쟁의 해결방법

□ 법의 사용능력

- 만약 국민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악법도 법이니까 지킨다
- 2) 제재가 두려워서 지킨다
- 3) 적극적인 방법으로 시정을 요구한다
- 4) 악법이니까 지키지 않는다

18페이지의 권리의식 부분과 겹침. 법의 사용능력 보다 권리의식 부분에 자리하는 것이 좋을 듯함.

- 귀댁의 자녀가 같은 또래의 아이들과 다투다가 상처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한다
- 2) 치료비를 받는다
- 3)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

분쟁의 해결방법

-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해결합시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 1) 바람직하다
- 2) 합리적이다
- 3) 몰인정하다
- 4) 불쾌하다

7페이지의 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법의 선택 부분과 겹침

- 만약 귀하의 가족 중 누가 사람을 때려서 경찰에 붙잡혀 갔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피해자나 그 가족을 만나 합의하겠다
- 2) 검찰이나 경찰계통에 아는 사람을 찾는다
- 3) 변호사를 찾아간다
- 4) 법의 해결에 맡긴다

IV. 법정립기관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태도

1. 법정립기관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태도

-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 1) 법의 절차가 복잡하고 자주 바뀌니까
- 2) 법이 불공평하므로
- 3) 법의 집행의 집행이 엄격하지 못하므로
- 4)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 5) 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편리하므로

- 다음 중 누가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정치인
- 2) 공무원
- 3) 법조인
- 4) 교육자
- 5) 기업인
- 6) 근로자
- 7) 종교인
- 8) 대학생

9) 농어민

14페이지의 준법정신과 겹침

- 다음의 각 부분이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3)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가) 국회나 정부에 서 법령을 만 들 때				
나) 행정 관 청 에 서 법을 적용할 때				
다) 파출소나 경찰 서에서 법을 적용할 때				
라) 검찰에서 법을 집행할 때				
마) 법원에서 판결 을 내릴 때				

- 국회의원이 만든 법은 국민인 우리가 만든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 2) 대체로 그렇다
- 3) 별로 그렇지 않다
- 4) 전혀 그렇지 않다

- 귀하는 면·동사무소나 구청에 갈 경우 어떻게 해야 일이 잘 처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원칙대로 하면 된다
- 2) 무조건 잘 부탁한다고 해야 한다
- 3) 압력을 넣어야 한다
- 4) 적으나마 뇌물을 주어야 한다
- 5) 기타

12페이지의 법적 경험과 겹침

2. 사법개혁에 대한 태도

-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 2)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 3)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4)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국민의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바람직하다
- 2) 바람직하지 않다

- 이른바 “로스쿨” 도입과 관련하여 현행 법조인양성방식에 대하여 많은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귀하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현행방식유지(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선발)
 - 2) “로스쿨” 방식도입(대학교육을 통한 법조인선발)
 - 3) 기타

- 2008년부터 일부 형사재판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배심제 재판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귀하는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삭제)
 - 1) 반드시 필요하다
 - 2) 어느 정도 필요하다
 - 3) 별로 필요하지 않다
 - 4) 전혀 필요하지 않다

- 만약 귀하께서 배심원으로 선발되어 참여 요청을 받는다면, 배심원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1) 있다
 - 2) 없다

- 배심제 재판 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배심제에 대한 홍보
 - 2) 국민들에 대한 법교육

- 3) 관련 제도의 정비
- 4) 법조계의 인식 전환
- 5) 기타

V. 현행 법제에 대한 견해

1. 현실에 맞지 않는 법

- 다음 중 가장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정치에 관한 법
- 2) 행정에 관한 법
- 3) 형사처벌에 관한 법
- 4) 경제에 관한 법
- 5) 조세에 관한 법
- 6) 노사관계에 관한 법
- 7) 농어촌에 관한 법
- 8) 친족상속에 관한 법
- 9) 기타

- 현행 민법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동성동본의 결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동성동본의 결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찬성한다
- 2) 현행 민법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그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
- 3) 한국적 전통으로 보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3) 자식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2005년 민법 개정 시 동성동본금혼을 근친혼의 금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소수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외국의 입법례도 있는 동성파트너십관계에 관하여 묻는 것은 어떨지요? 질문은 추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정치관계법

3. 노사관계법 위반의 책임 소재

-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노사관계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 요즘 노사관계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 3) 별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 4) 전혀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나) 노사관계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사용자
- 2) 근로자
- 3) 정부
- 4)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4. 환경오염의 규제방향

- 귀하는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기업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환경오염의 방지 및 복구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켜야 한다
- 2) 벌금보다는 징역 등 체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 3) 규제보다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치중하여야 한다
- 4) 기타

2008 국민법의식조사 예상 설문분야 및 문항에 대한 자문의견

박 영 철
(용인송담대학 법률실무과 교수)

1. 법의식

(1) 의 의

“법의식”이란 “법규범, 법제도, 법관계, 법현실 등을 포괄하는 법현상에 관한 국민의식”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의식은 첫째, 특정 상황에 있어서 사람이 법을 자각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인지적 요소), 둘째, 법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사람이 갖고 있는 표상, 감각, 의견(감정적 요소), 셋째, 법에 대하여 사람이 갖고 있는 好惡, 贊反, 존중 또는 경시 등의 태도(평가적 요소), 넷째, 이상의 요소들에 의하여 결정된 반응 - 법의 제정·개정·폐지·수호 등 - 을 외부로 표현하려는 의지(의지적 요소) 등 4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즉, 법의식은 ① 법인식, ② 법감정, ③ 법적 가치판단, ④ 법에 대한 의지 등으로 구성된다.

(2) 법의식의 구성요소

① 법인식

법에 대한 지적 측면으로서의 ‘법인식’은 법의 구체적 규정내용 또는 법의 기능이나 역할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정도를 규명한다.

② 법감정

법에 대한 감정적 측면으로서의 ‘법감정’은 국민의 논리적 판단이 아닌 법과 관련한 好惡, 찬반 또는 무대응 등 감정상의 태도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대통령에 대한 불신, 특정 정부형태의 선호, ‘법은 기득권자를 위한 수단이고 정의롭지 못하다.’ 등이다.

③ 법적 가치판단

법에 대한 평가적 측면으로서의 ‘법적 가치판단’은 일정한 법규정이 그 목적 - 자유와 권리의 보장 - 을 실현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의 모든 산출(output)에 대한 일정한 판단이 포함된다.

④ 법에 대한 의지

법의식의 의지적 측면으로서의 ‘법에 대한 의지’는 일정한 목표를 향하여 실천적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의식과 행위를 매개하는 요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의 정신을 존중하고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또는 법의 제정, 개정, 폐지 등으로 표현되거나 소극적인 시민적 불복종 내지 적극적인 저항권으로 표현될 수 있다.

2. ‘국민법의식조사연구’에 대한 의견

(1) 국제적 법환경의 고려 필요성

국민의 법의식조사는 1991년, 1994년, 1996년 등 3차에 걸쳐 실시된 이후 10여년만에 실시된다. 그 동안 법의식을 둘러싼 국내외의 법환경 -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환경 - 이 변화됨에 따라 법의식의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은 명백하다. 그 동안의 법의식조사는 주로

국내의 법환경을 중심으로 법의식의 변화 내지 조사를 시행하였고, 이번 연구에서도 그 입장은 유지되고 있는 듯하다. 법의식은 국내의 법환경은 물론 국제적 법환경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WTO 체제하의 무한경쟁의 성립, 인터넷 등을 통한 무한 교류, 초강국 미국의 성립 등으로 세계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 환경이 변화되었고, 그 변화가 국내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 환경변화에 영향을 미쳐 법의식도 변화시킨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적 법환경의 변화에 따른 법의식 변화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할 것이다.

(2) 영역별 균형

1994년의 연구에서는 ① 법에 대한 느낌과 생각(5개 문항), ② 가정생활 및 사회현상(4개 문항), ③ 법생활(18개 문항), ④ 국가기관에 대한 의견(7개 문항), ⑤ 현행법령에 대한 의견(6개 문항) 등 5개 영역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2008년의 연구에서는 ① 사회변동과 가치관의 변화(4개 문항), ②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6개 문항), ③ 국민의 법생활(28개 문항), ④ 법정립기관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태도(11개 문항), ⑤ 현행법제에 대한 견해(4개 문항)¹⁾ 등 5개 영역 53개 문항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전의 연구와 비교할 때 19개 문항이 새로이 작성되고, 34개 문항이 그대로 존속되어 그 변화의 추이를 살펴 볼 수 있다. 이전 연구와 비교할 때 이번 연구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항은 1994년 당시의 국내 법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융실명제와 정치개혁법과 관련된 문항과 법 준수 및 국가기관의 정당성 관련 문항, 그리고 전통문화와 법규정의 괴리 관계에 관한 문항이다.

1) 정치관계법 관련 문항은 아직 제시되고 있지 않음.

<제외된 문항>

- ① 다음의 각 분야에서 법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법생활)
- ② 금융기관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자기이름으로 하여야 하는 금융실명제가 작년 8월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귀하의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종전과 비교하여 어떠하십니까?(법생활)
- ③ 귀하는 법과 관련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누구와 친분이 있으면 가장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법생활)
- ④ 국회에서 만든 법은 국민인 우리가 만든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국가기관)
- ⑤ 최근 국회에서 깨끗한 선거풍토 및 정치질서 확립을 위한 이른바 정치개혁법들이 새로이 만들어졌습니다. 귀하는 이 법들이 잘 지켜지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현행법령)
- ⑥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은 결혼청첩장 내는 것과 초상집에서 술과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현행법령)

1994년의 연구와 비교하여 볼 때, 영역구분의 차이는 없고 단지 법생활 영역의 비중을 증대하고 있는데, 그 중요성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내외의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법의식을 조사하기 위한 첫 번째 영역 및 두 번째 영역의 설문항목이 다소 증대될 필요성이 있으며, 다섯 번째 영역 중 법에 대한 의지를 평가하기 위한 설문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보다는 우리’, ‘개인 보다는 가정 내지 국가’, ‘자유보다는 질서’, ‘충과 효의 중시’라는 유교적 전통이 생활 속에 아직도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이로 인하여 ‘참고지내야 한다.’는 ‘인내’가 미덕으로 그 가치를 부여받음으로써 개인적 자유의 보장을

그 본질적 가치로 하는 법규범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설문의 도입이 필요하다.

(3) 사업목적

1994년의 ‘국민법의식조사연구’에 의하면 ‘국민의 법감정 및 법생활과 법제도의 괴리를 측정하여 법의식과 법률문화 이론의 정립을 위한 근거를 확보하게 하고, 법의식 제고와 법치주의 확립방안을 찾게 하며, 나아가 국가의 입법 및 법집행적 수립방향의 큰 줄기를 잡아줄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²⁾

법이 규범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민의 법의식에 부합하는 법이 제정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와 구조가 완비되어 제기능을 다하여야 한다. 즉, 법의식이 투입되어 국가기관이 일정한 변환과정을 통하여 국민의 법의식에 합치되는 정책을 산출하여 이것이 다시 법의식으로 환류(feedback)된다. 법의식으로 환류되면 국내외의 법환경에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법의식이 새로운 투입을 하고, 국가기관이 이를 변환하여 산출하며, 이것이 다시 법의식으로 환류되는 ‘투입→변환→산출→환류’라는 과정이 반복된다. 이러한 점에서 법의식의 한 요소인 법감정과 법제도의 괴리를 측정하여 법의식을 이해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며, 오히려 ‘법의식과 법제도의 괴리’를 이해하여 법이 그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이 연구의 본래 목적이 아닐까 싶다.

1994년 이후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정부는 아니지만, 문민정부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 정도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민주화도 진전되고 법치주의도 정착되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에 대한 관심이

2) 박상철, '94 국민법의식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4), 16면.

무관심형 내지 냉소형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는 권력층 내지 소위 사회지도층들의 불법적 행위가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서만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경쟁체제 아래에서 무관심 내지 냉소는 법 아닌 그 밖의 수단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이것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의식 중 ‘의지적 요소’가 중요하고, 국민의 ‘법에 대한 의지’를 인식함으로써 법의 제정 내지 현행법의 개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설문의 도입이 보다 바람직하다.

2008 국민 법의식 조사 연구 1차자문회의 자문내용

안진
(전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설문분야와 문항 초안을 검토하여 몇 가지 자문을 드립니다.

1. 전반적인 사항

- 1) 조사설계시에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들어갈 내용들 - 특히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보고자하는 것-을 미리 체크하십시오.
- 2) 무엇보다도 표본추출(sampling)의 방법이 중요할 것입니다. 계층별, 도시·농어촌지역별 안배가 특히 중요할 것입니다. 무작위 표출보다는 층화표출이 적당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 3) 초안은 설문분야에 관한 것이어서 응답자의 인구학적 변수, 사회경제적 지표(SES index)를 만들 기초항목들이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 최종설문 작성 시에 설문지 표지에 설문 ID 표시하는 것과 설문 첫페이지 서두에 인구학적 변수에 관한 응답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인구학적 변수(성별, 거주지, 학력, 소득, 직업, 종교) 중 거주지 혹은 출생지 분류(대도시, 중소도시, 소도시, 농촌, 어촌 등등)와 직업분류(표준직업분류표를 사용할지 여부)는 분석을 예상하여 적절하게 선택지를 만드시길.

- 4) 문항내용 중 ‘살아있는 법’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는데 일상생활 중 응답자가 관심 있는 일상생활의 규칙의 내용에 관한 설문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예컨대, 주거공동체의 아파트 관리규약, 직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내규 등등에 대한 관심이나 제개정경험 등이 있는지 묻는 설문을 구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조례 등과같이 지자체의 입법쟁점이나 입법과정에 관여한 경험을 설문으로 담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설문의 세부내용에 대한 자문

전반적으로 wording 상의 문제가 많이 발견됩니다.

I. 사회변동과 가치관변화

- 가족구조의 변화 중 호주제의 폐지를 인지하고 있는지, 또 폐지에 대한 찬반의견은 어떤지 묻는 설문을 포함시키면 어떨지요?
- 직장질서 변화 설문의 wording을 다시 하셨으면...예) ‘직장의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한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장의상사가 내린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로 고쳤으며 합니다.
- 여성의 법률상의 지위변화분야 첫 질문에 “우리사회에서 성평등의 실현정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었으면 함.
 - ① 법률상으로도 사회관습상으로도 여전히 여성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 ② 법률상으로는 평등하나 사회관습상으로는 여성이 여전히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 ③ 법률상으로는 사회관습상으로도 여성이 남성과 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④ 잘 모르겠다.

- 여성의 법률상의 지위변화분야 나)항 질문에 대한 선택지 중 “여성 관련 법의 집행과정에서 작용하는 성고정관념이나 편견”(예컨대 성폭력 성희롱 사건에 대한 법적 처리과정에서 경찰, 검찰, 법관의 성평등의식수준이나 성고정관념등)를 포함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II.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

- 법규범력의 좌표 설문을 복수응답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 : 예컨대 (아래의 선택지 중 몇 개를 골라) 중요한 순서대로 번호를 쓰시오.”라고 응답하게 하여 분석하는 것이 좋을 듯함. 법의 필요성을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없을 것이므로.
 - : 굳이 단답응답을 원한다면 질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표시해주십시오 라고 해야할 듯 함.
 - : 설문을 그대로 두더라도 선택지 7)에 기타항목을 포함시켜야 할듯함.

III. 국민의 법생활

- 1. 법생활과 법적 경험의 설문들에
 - 신용카드 가입과 사용과 관련된 경험을 설문으로 추가하면 어떨른지요?
- 12쪽, 법적 경험에 관한 설문에 소송경험 유무에 관한 질문과 대체 분쟁해결기구를 이용한 경험에 관한 질문을 포함시키면 어떨지?
 - : 사법적 구제(혹은 사법기구의 경험)선택지로 형사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등등
 - : 비사법적 구제(비사법기구 혹은 준사법기구를 통한 법적 경험)선택지로 노동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인권위원회,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등

(이 경우 비사법적 구제신청도 넓은 의미의 법적 경험으로 볼 수 있는지를 논의가 필요할 듯 함)

- 14쪽 준법정신 설문 중 누가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도 복수응답으로 처리하면 어떨지요?(예컨대 순서대로 2개 혹은 3개를 고르시오 라든지...)
- 16쪽 고발정신에 관한 설문에 무단횡단이나 담배꽂초 버리기 등의 예시 외에도 교통법규위반(예컨대 과속,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을 예시로 든 설문을 포함시키면 어떨지요?
- 16쪽, 이웃집 담을 넘는 범인 신고의 예시와 함께 가정폭력(이웃의 부부싸움, 노인학대, 아동학대 등)의 예시를 들면 응답자의 어떨까요?
- 17쪽 나항) 선택지 1)성폭행을 더 포괄적인 용어인 성폭력으로 바꾸면 어떨지?
- 18쪽 권리의식 악법에 관한 설문 선택지 중 저항권에 관한 선택지를 ‘시정요구’와 구분하여 응답항목에 더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 18쪽 권리의식 첫 설문과 19쪽 법의 사용능력 첫 설문이 중복되어 있으므로 하나를 삭제해야 할 듯함.

IV. 법정립기관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태도

- 20쪽 “누가 법을 잘 지키지 않는가”라는 설문이 14쪽 준법정신 설문과 중복되어 있으므로 하나를 삭제해야 할듯함.

2008 국민법의식조사에 관한 자문사항

양 건

(한양대학교 법학과 교수)

- * 가치관 변화에 관한 설문은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이 오늘날 얼마나 존속되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치관 변화에 관한 설문 수를 더 증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 과거 한국법제연구원의 법의식조사연구에서의 주요 설문과 동일한 내용의 설문을 통해 그간의 법의식변화의 추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 * 과거 법의식조사 가운데 가장 참고할 만한 것은 함병춘교수와 임희섭 교수의 조사라고 봅니다.

이들의 설문 중 주요한 것들을 설문으로 하여, 그간의 변화의 추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사람들이 법을 준수하는 적극적 이유는 무엇인지에 관한 설문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준수에 관한 설문조사로 Tom Tyler의 조사가 있습니다(양 건, 법준수에 관한 소고 : Tyler의 조사연구, 법조, 2005, 3월 참조).

그 설문과 동일한 내용들을 설문으로 하여 비교연구를 하면 유익할 것입니다.

* 설문으로 추가할 사항입니다.

- 생명권에 관한 문제들, 사형, 낙태 자유화, 안락사 문제
- 간통죄 존치여부의 문제
- 노조 불법, 폭력적 파업, 폭력시위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책
- 연고주의 대 법치주의의 갈등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관한 설문들.

2008 국민법의식조사 예상 설문분야 및 문항에 대한 자문의견

이 금 옥
(순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 설문분야

- I. 사회변동과 가치관의 변화
 - 1. 가족구조의 변화
 - 2. 직장질서의 변화
 - 3. 여성의 사회적 지위 변화
 - 4. 여성의 법률상 지위 변화
- II.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
 - 1. 법에 대한 인상
 - 2. 법규범력의 좌표와 법의 존재가치에 대한 판단
 - 3. 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법의 선택
 - 4. 탈법행위자에 대한 평가
- III. 국민의 법생활
 - 1. 법생활과 법적 경험
 - 2. 준법정신과 권리의식
 - 3. 법의 사용능력과 분쟁의 해결방법
- IV. 법정립기관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태도
 - 1. 법정립기관에 대한 태도
 - 2. 법집행기관에 대한 태도

3. 사법개혁에 대한 태도

V. 현행 법제에 대한 견해

1. 현실에 맞지 않는 법
2. 정치관계법
3. 노사관계법 위반의 책임 소재
4. 환경오염의 규제방향

■ 설문분야별 설문문항

I. 사회변동과 가치관의 변화

1. 가족구조의 변화

- 귀하 가정의 경우 가족공동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1) 아버지(남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
- 2) 어머니(아내)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
- 3) 부모(부부)의 공동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
- 4) 가족 모두의 의사를 종합하여 이루어진다
- 5) 기타

2. 직장질서의 변화

- 직장의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한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무조건 들어준다
- 2) 가능한 한 들어준다
- 3) 가능한 한 거절한다
- 4) 무조건 거절한다

3. 여성의 사회적 지위 변화

-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그렇다
- 2) 그렇지 않다

나)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여성이 가장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그렇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답할 것)

- 1) 정치참여
- 2) 재산상속
- 3) 취업 및 승진
- 4) 가정에서의 역할
- 5) 기타

4. 여성의 법률상 지위 변화

-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법률상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그렇다
- 2) 그렇지 않다

나) 그렇다면,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그렇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답할 것)

- 1) 여성관련법 규정 자체의 미비 또는 결함
- 2) 여성의 권리의식 부족 또는 법생활의 불철저
- 3) 남성의 이해 부족 또는 이기심 팽배
- 4) 남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
- 5) 기타

II.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

1. 법에 대한 인상

- 귀하는 “법”이란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 1) 공평하다
- 2) 민주적이다
- 3) 엄격하다
- 4) 편파적이다
- 5) 권위적이다

- 귀하는 법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반드시 필요하다
- 2) 어느 정도 필요하다
- 3) 별로 필요하지 않다
- 4)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법규범력의 좌표와 법의 존재가치에 대한 판단

법규범력의 좌표

- 법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에
만 답할 것)

- 1) 국가통치를 위하여
- 2) 사회질서유지를 위하여
- 3) 사회개혁을 위하여
- 4) 분쟁해결을 위하여
- 5) 범죄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 6)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의 존재가치에 대한 판단

- 만약 우리사회에서 법이 다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
니까?

- 1) 매우 자유로울 것이다
- 2) 마찬가지일 것이다
- 3) 불편할 것이다
- 4) 사회가 전혀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3. 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법의 선택

- 분쟁이 생겼을 때 “법으로 해결합시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 1) 바람직하다
- 2) 합리적이다
- 3) 인정미가 없다
- 4) 불쾌하다

4. 탈법행위자에 대한 평가

- “법을 어기면서도 잘 사는 사람은 대체로 능력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 1) 전적으로 동의한다
- 2) 대체로 동의한다
-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Ⅲ. 국민의 법생활

1. 법생활과 법적 경험

법인지경로

- 귀하는 생활법률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 1) 신문, TV, 라디오 등을 통해서
- 2) 주위 사람들로부터 듣고서

- 3) 책이나 잡지를 보고서
- 4) 학교에서 배워서
- 5) 사건(분쟁)을 겪고 나서
- 6) 정부홍보물을 보고서
- 7)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 법인지욕구

- 귀하는 신문에 실리는 법령에 관한 기사를 자세히 보십니까?
 - 1) 자세히 본다
 - 2) 대충 본다
 - 3) 거의 보지 않는다
 - 4) 전혀 보지 않는다

- 귀하는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행정관청의 민원상담실·법률구조공단·소비자보호단체 등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상담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1) 자주 있었다
 - 2) 한두 번 있었다
 - 3) 전혀 없었다

- 귀하는 고소장, 고발장 또는 행정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서류(진정서 등)와 같은 법률서류를 직접 작성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1) 고소장, 고발장을 직접 작성해 본 적이 있다
 - 2) 고소장이나 고발장은 아니더라도 민원서류를 직접 작성해 본 적이 있다

- 3) 직접 작성해 보지는 않았으나, 다른 사람을 통해 작성해 본 적은 있다
 - 4) 작성할 일이 있었지만, 어려워서 작성하지 못했다
 - 5) 작성할 일이 전혀 없었다
- 귀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펀드를 가입할 때) 보험계약서나 통장의 뒷면에 있는 규정(약관)을 보십니까?
- 1) 자세히 본다
 - 2) 대충 본다
 - 3) 보지 않는다
- 귀하는 주택, 상가의 매매, 임대차 또는 일반상거래에 필요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약서를 검토하십니까?
- 1) 매우 그렇다
 - 2) 다소 그런 편이다
 - 3) 별로 그렇지 않다
 - 4) 전혀 그렇지 않다
- 법조문이나 법률용어가 딱딱하고 생소하여 어렵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 1) 매우 그렇다
 - 2) 다소 그런 편이다
 - 3) 별로 그렇지 않다
 - 4) 전혀 그렇지 않다

□ 법교육

- 다음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단계에서의 법교육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 귀하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법 교육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잘되고 있다
- 2) 대체로 잘되고 있다
- 3) 별로 되고 있지 않다
- 4) 전혀 되고 있지 않다

나) 귀하는 보다 적절한 법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부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조직에 대한 지식
- 2)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생활법규
- 3) 법을 사용하는 능력의 향상
- 4) 준법정신의 함양을 위한 윤리의식
- 5) 기타

다) 귀하께서 학교교육을 통해서 배웠거나 현재 배우고 있는 법 관련 지식이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도움이 된다
- 2)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 3)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 만약 귀하께서 법에 관해 배울 기회가 생긴다면, 다음 중 어떤 분야를 가장 배우고 싶으십니까?

- 1) 국민의 권리 · 의무에 관한 헌법 분야
- 2) 부동산, 금융거래 등 민사 분야
- 3) 각종 범죄에 대한 고소 · 고발 등 형사 분야
- 4)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률적 처리 분야
- 5)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노동 · 사회복지 분야
- 6) 건설 · 건축 관련 분야
- 7) 소득세 · 상속세 등 조세 분야
- 8) 전자상거래, 통신비밀보호 등 인터넷 관련 분야
- 9) 혼인, 상속 등 가족법 분야
- 10) 기타

법적 경험

- 귀하는 금전관계로 소송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권리실현을 위해서는 소송을 꺼릴 이유가 없다
- 2)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번거롭다
- 3) 법정에 서는 것 그 자체가 불명예스럽다
- 4) 기타

- 귀하는 경찰서 · 검찰청 · 법원에 갈 경우 어떻게 해야 일이 잘 처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원칙대로 하면 된다

- 2) 무조건 잘 부탁한다고 해야 한다
- 3) 압력을 넣어야 한다
- 4) 적으나마 뇌물을 주어야 한다
- 5) 기타

- 귀하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상식적으로 살면 된다
- 2) 법대로만 하면 된다
- 3) 법과 관련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 4) 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한다
- 5) 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어겨야 한다

법지식

- 귀하는 법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어렵다
- 2) 대체로 어렵다
- 3) 별로 어렵지 않다
- 4) 전혀 어렵지 않다

- 법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법이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답할 것)

- 1) 법률용어가 딱딱하고 생소해서
- 2) 법 내용이 실제 생활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아서
- 3) 법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없어서

4) 법이 귀찮고 관심이 없어서

- 귀하는 스스로 법에 관한 전반적 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잘 알고 있다
- 2) 어느 정도 아는 편이다
- 3) 별로 알고 있지 못하다
- 4)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

- 현행 민법은 시집간 딸과 부모를 모시고 사는 아들 중 누가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 1) 시집간 딸
- 2) 부모를 모시고 사는 아들
- 3) 똑같다
- 4) 잘 모르겠다

2. 준법정신과 권리의식

준법정신

○ 준법질서

-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 2)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
- 3)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나)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만 답할 것)

- 1) 법의 절차가 복잡하고 자주 바뀌니까
- 2) 법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 3) 법의 집행이 엄격하지 못하므로
- 4)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 5) 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편리하므로

다) 다음 중 누가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정치인
- 2) 공무원
- 3) 법조인
- 4) 교육자
- 5) 기업인
- 6) 근로자
- 7) 종교인
- 8) 대학생
- 9) 농어민

라) 귀하께서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 1) 법을 잘 몰라서
- 2) 번거롭고 불편해서

- 3) 법을 지키지 않아서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 4) 법을 지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모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 5)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 6)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 사적 모임에서의 규칙 준수

- 다음은 동창회 · 계 등의 모임에서 회칙이나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 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 귀하가 가입한 동창회 · 계 등의 모임에서 회칙이나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 1) 그렇다
- 2) 그렇지 않다

나) 만약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만 답할 것)

- 1) 친한 사이라서
- 2) 벌칙이 약해서
- 3) 이익이 없어서
- 4) 생활이 바빠서
- 5) 기타

○ 분야별 법준수 정도

- 다음의 각 분야에서 법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 1) 정치분야
- 2) 행정분야
- 3) 경제계
- 4) 노사관계
- 5) 교육계
- 6) 교통질서
- 7) 행락질서

○ 고발정신

- 귀하가 무단횡단을 하거나 담배꽂초를 버리다 단속반에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 1) 법을 어겼으므로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
- 2) 재수가 없는 경우라고 생각한다
- 3)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으나 법적 처벌은 지나치다

- 만약 도둑이 이웃집 담을 넘는 것을 보았을 경우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당연히 신고한다
- 2) 경우에 따라 신고한다
- 3) 두려워서 신고하지 않는다
- 4) 귀찮아서 신고하지 않는다
- 5) 이웃과 합세하여 잡는다

○ 가장 시급히 퇴치하여야 할 범죄

-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퇴치하여야 할 범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 1) 성폭행
- 2) 조직폭력배
- 3) 마약사범
- 4) 강·절도사범
- 5) 음주운전
- 6) 기타

나)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 1) 부정부패
- 2) 탈세
- 3) 부동산투기사범
- 4) 환경사범
- 5) 경제사범
- 6) 기타

다) 범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피해자 및 일반시민의 철저한 신고정신
- 2)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 3) 관계당국의 엄격한 법집행 및 처벌강화
- 4) 가정과 사회에서의 건전한 시민 교육
- 5) TV · 신문 등 대중매체의 선도적 역할

6) 기타

권리의식

- 만약 국민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악법도 법이니까 지킨다
- 2) 제재가 두려워서 지킨다
- 3) 적극적인 방법으로 시정을 요구한다
- 4) 악법이니까 지키지 않는다

- 불량품(전자제품, 식품 등)을 샀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한 번 산 것이니 어쩔 수 없다
- 2) 끝까지 따져서 바꿔온다
- 3)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한다
- 4) 재판을 하여 손해배상까지 받아낸다

- 만약 귀하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해주는 대로 만족한다
- 2) 치료비만 받는다
- 3)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까지 받는다
- 4) 고소하여 법대로 처리한다

3. 법의 사용능력 및 분쟁의 해결방법

법의 사용능력

- 만약 국민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권리의식(18쪽) 첫 문항과 중복)

- 1) 악법도 법이니까 지킨다
- 2) 제재가 두려워서 지킨다
- 3) 적극적인 방법으로 시정을 요구한다
- 4) 악법이니까 지키지 않는다

- 귀댁의 자녀가 같은 또래의 아이들과 다투다가 상처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한다
- 2) 치료비를 받는다
- 3)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
- 4) 때려 양갓을 한다

분쟁의 해결방법

-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해결합시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7쪽 3. 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법의 선택과 중복)

- 1) 바람직하다
- 2) 합리적이다
- 3) 몰인정하다
- 4) 불쾌하다

- 만약 귀하의 가족 중 누가 사람을 때려서 경찰에 붙잡혀 갔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피해자나 그 가족을 만나 합의한다
- 2) 검찰이나 경찰계통에 아는 사람을 찾는다
- 3) 변호사를 찾아간다
- 4) 법의 해결에 맡긴다

IV. 법정립기관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태도

1. 법정립기관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태도

-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14쪽, 준법질서와 중복)

- 1) 법의 절차가 복잡하고 자주 바뀌니까
- 2) 법이 불공평하므로
- 3) 법의 집행의 집행이 엄격하지 못하므로
- 4)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 5) 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편리하므로

- 다음 중 누가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14쪽, 준

법질서와 중복)

- 1) 정치인
- 2) 공무원
- 3) 법조인
- 4) 교육자
- 5) 기업인
- 6) 근로자
- 7) 종교인

- 8) 대학생
- 9) 농어민

- 다음의 각 부분은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3)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가) 국회나 정부에 서 법령을 만 들 때				
나) 행정관청에서 법을 적용할 때				
다) 지구대나 경찰 서에서 법을 적용할 때				
라) 검찰에서 법을 집행할 때				
마) 법원에서 판결 을 내릴 때				

- 국회의원이 만든 법은 국민인 우리가 만든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그렇다
- 2) 대체로 그렇다

- 3) 별로 그렇지 않다
 - 4) 전혀 그렇지 않다
- 귀하는 경찰서·검찰청·법원에 갈 경우 어떻게 해야 일이 잘 처리된다고 생각하십니까?(12쪽, 법적 경험과 중복)
- 1) 원칙대로 하면 된다
 - 2) 무조건 잘 부탁한다고 해야 한다
 - 3) 압력을 넣어야 한다
 - 4) 적으나마 뇌물을 주어야 한다
 - 5) 기타
2. 사법개혁에 대한 태도
-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 2)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 3)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4)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국민의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바람직하다
 - 2) 어느 정도 바람직하다
 - 3)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 4)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 이른바 “로스쿨” 도입과 관련하여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법조인 선발인원의 증가
- 2) 변호사 수입료의 하락
- 3) 전문법조인의 양성
- 4) 법조계 비리나 부패 감소
- 5) 고액의 등록금
- 5) 기타

- 2008년부터 일부 형사재판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배심제 재판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반드시 필요하다
- 2) 어느 정도 필요하다
- 3) 별로 필요하지 않다
- 4) 전혀 필요하지 않다

- 만약 귀하께서 배심원으로 선발되어 참여 요청을 받는다면, 배심원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1) 반드시 참여한다
- 2) 어느 정도 참여할 것이다
- 3)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
- 4) 절대로 참여하지 않는다

- 배심제 재판 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배심제에 대한 홍보
- 2) 국민들에 대한 법교육
- 3) 관련 제도의 정비
- 4) 법조계의 인식 전환
- 5) 기타

V. 현행 법제에 대한 견해

1. 현실에 맞지 않는 법

- 다음 중 가장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정치에 관한 법
- 2) 행정에 관한 법
- 3) 형사처벌에 관한 법
- 4) 경제에 관한 법
- 5) 조세에 관한 법
- 6) 노사관계에 관한 법
- 7) 농어촌에 관한 법
- 8) 친족상속에 관한 법
- 9) 사회복지관련 법
- 10) 기타

- 현행 민법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동성동본의 결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동성동본의 결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찬성한다
- 2) 현행 민법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그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
- 3) 한국적 전통으로 보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3) 자식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2. 정치관계법

- 우리 사회의 고질인 정치부패를 치유하고 정치의 투명화,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1) 사전선거운동
- 2) 국회의원 정수
- 3)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 4) 당내경선 및 정당공천
- 5) 기타

3. 노사관계법 위반의 책임 소재

-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노사관계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 요즈음 노사관계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 3) 별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 4) 전혀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나) 노사관계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만 답할 것)

- 1) 사용자
- 2) 근로자
- 3) 정부
- 4)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4. 환경오염의 규제방향

- 귀하는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기업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환경오염의 방지 및 복구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켜야 한다
- 2) 벌금보다는 징역 등 자유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 3) 규제보다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치중하여야 한다
- 4) 기타

* 국민법의식조사 연구의 사업방향에 관한 소견

- 국민법의식의 ‘조사 목적’이 구체적으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함
- 국민법의식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항목별 ‘평가 및 개선방안’이 요구됨

* 설문내용 중 추가 내지 수정할 항목

- 본문의 각 설문내용 중에서 직접 추가 내지 수정하였음
- 그 외에 추가할 사항은 대략 아래와 같이 정리해 봄

* 법의 존재가치에 대한 판단(7쪽에 추가)

- 귀하께서는 현재 우리사회에 법보다 정서법이나 때법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그렇다
- 2) 어느 정도 그렇다
- 3) 별로 그렇지 않다
- 4) 전혀 그렇지 않다

- 현행 민법은 시집간 딸과 부모를 모시고 사는 아들 중 누가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13쪽)

이 설문 문항은 1990년 민법개정시의 내용이므로 ‘2008년 국민법의식조사’연구와는 시의성을 갖지 못하므로 다른 문항으로의 대체가 바람직함.

* 사법개혁에 대한 태도

- 법률시장 개방이 우리 법조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귀하는 사법부(법원)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 1) 매우 신뢰한다
- 2) 신뢰하는 편이다
- 3)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 4)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그렇다면, 사법불신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답할 것)

- 1) 판결에 대한 불만
- 2) 판사들의 권위적 재판태도
- 3) 전관예우관례 등 법조비리
- 4) 언론보도

* 2. 정치관계법(25쪽, 추가)

- 우리 사회의 고질인 정치부패를 치유하고 정치의 투명화,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1) 사전선거운동
- 2) 국회의원 정수
- 3)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 4) 당내경선 및 정당공천
- 5) 기타

2008 국민법의식조사연구 제1차 자문회의 토론문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 국민법의식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설문문항이 대체로 무난하지만 조사방법론 전문가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문문항의 내용과 체계를 보다 세련되게 구성할 필요가 있음
- 국민법의식조사에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분야에 관한 의견이 조사되어야 하고, 설문조사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구성되어야 하는 바, 다음과 같은 분야가 보완될 필요가 있음
 - 사법기관(경찰, 검찰, 법원)에 대한 신뢰도 및 서비스 만족도 조사
 - 특별검사제도에 대한 신뢰도 및 서비스 만족도 조사
 - 법집행기관(행정공무원 등)에 대한 신뢰도 및 서비스 만족도 조사
 - 유전무죄(양형부당, 고위층 인사에 대한 낮은 양형 등)에 관한 의식
 - 사면 및 대통령 사면권 제한에 관한 국민의식
 - 법률서비스에 접근기회의 차단(높은 변호사비용 등)에 관한 의식
- 기존의 국민법의식조사에 관련된 설문내용을 참조하면서 최근 5년 이내의 설문조사내용과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대국민의식조사에 관한 관련문헌 참조

2008 국민법의식조사 문항 초안에 대한 의견

이 철 우
(연세대학교 법학과 교수)

- 1965년 조사와 90/94년 조사에서 사용한 문항들을 일부 계승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다만 당시의 조사들은 각각 그 시대의 상황들을 반영하고 있다. 1965년 당시의 시대적 쟁점은 법의식의 근대화였기 때문에 유교 등 전통적 법의식의 지속 여부, 전통적 사회관계의 법적 투영 등을 묻는 데 치중했다. 90/94년 조사는 65년 조사의 많은 부분을 계승하면서도, 정치권력의 민주화라는 당시의 변화를 반영하는 문항들을 포함하였다. 올해 조사를 실시한다고 할 때 현재의 시대가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미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
- 제시된 문항 중에는 연령에 따른 위계나 동성동본의 결혼 등과 관련하여 전통적 규범의식과 가치관의 지속성을 묻는 것들이 있는 반면 현재 이루어지는 가치의 전환이나 도전들을 반영하는 문항은 찾기 어렵다. 지금은 90년대와도 다르다. 대통령이 스스로를 언론권력의 피해자라 생각하는 시대이다.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 사해동포주의와 국민국가의 논리간의 간극(예를 들어, 불법체류자를 법대로 취급할 것인지의 문제) 등 오늘날을 사는 사람들에게 절실한 문제들을 물어야 할 것이다.
- 젠더 차별 등은 시대적 적실성을 갖는 주제들이지만, 문항은 지나치게 여성=피해자라는 틀에 박힌 관념만을 반영하고 있다.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처우, 여성의 병역의무, 고용에서 남성을

위한 쿼터, 동성결혼 및 가족 등 현재 이루어지는 변화의 지점을 포착하는 문항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 “귀하는 면·동사무소나 구청에 갈 경우 어떻게 해야 일이 잘 처리된다고 생각하십니까?”와 같은 현실과 동떨어진 질문들이 발견된다. 요즘 세상에 면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뇌물주고 처리해야 할 만큼 복잡한 일이 있는가? 입찰 등에서 자기가 속한 회사를 위해 증뢰를 한다든가 탈법행위를 하는 것을 비난할 수 있겠는지와 같이 현대인의 사회생활이나 경제생활에서 부딪히는 상황 및 도덕적 딜레마를 느끼는 상황을 포착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 일부 질문은 과연 피조사자가 규범적으로 옳다고 생각되는 답을 선택할지 아니면 현실을 잘 묘사하고 있는 답을 선택할지 예측하기 힘들게 되어 있다. 미국에서 ‘브래들리’ 효과가 논의되듯이 설문조사에서 늘 부딪히는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사 전문가의 개입이 절대로 필요하다.
- 질문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만약 국민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민을 억압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어떤 법이 그러한가?
- 법이 왜 필요한가 등의 문제에서는 순위를 매긴 복수의 답변을 가능하게 해야 하는가?
- 로스쿨이나 국민참여재판은 시의성 있는 주제들인데, 질문들은 이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이 없다면 답변하기 힘들게 되어 있다.
 - 그 제도들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묻고, 풀이해 준 후 물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소매심과 한국의 배심이 어떻게 다른지를 모르는 상태로 배심에 대한 견해를 제시할 수 있을까?

- 법학교육개혁과 관련해서도, 변호사의 수와 질의 관계 등 쟁점화된 문제들이 많은데 그러한 이슈들을 다루지 않고 있다.

2008 법의식조사 자문회의 - 토론문

정 상 우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이론연구의 방향성은 선행연구 정리와 외국의 경우와의 비교 연구에 있을 것 같음. 외국사례와의 비교 연구는 시간을 두고 할 수 있겠으나, 선행연구 정리는 법의식 조사 이후 함께 비교 정리되기 위해서는 시급히 정리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됨. 따라서 조사 결과의 분석 범위를 염두에 두고 과거 법의식 조사의 사례나 분석 결과, 다른 기관 예컨대 법제처나 법무부, 형사정책연구원, 인권위원회, 청렴위원회 등에서 법의식과 관련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음. 어려운 작업일 수 있겠으나 설문을 작성하거나, 비교 연구의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됨.
- 방법론에 있어서, 이미 연차 계획이 정해졌겠으나 일반국민과 전문가가 법의식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에, 같거나 유사한 설문으로 하게 된다면 함께 즉 같은 시기에 조사하는 것이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됨. 아울러 세부 분야에 따른 법의식 조사도 한다고 계획한다면, 올해 조사의 범위를 한정하고 분명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 항목과 관련하여서 사회변동에 있어 여성 항목은 하나로 해도 된다고 보임. 다른 추가가 필요한 분야로 사이버(인터넷) 분야, 외국인에 대한 분야가 있을 것임. 가치관의 변화와 관련해서 관습과 법, 연고주의와 법, 전통문화적 이념과 근대적인 법이념과의 괴리

같은 것을 설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유진오, 함병춘, 유기춘 등 한국적 법문화를 시도했던 학자들이 생각한 법문화 사상과 일반국민의 법문화 사상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임. 또한 우리나라에서의 법상징에 관한 설문도 추가하면 좋을 것임.

-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법무부의 법교육은 이미 많은 발전을 보여 왔고, 실제 법생활에 유의미한 결과들을 낳고 있다고 보여짐. 이 부분에 대한 설문을 만들 필요가 있음.
- 법의 이념이나 국가가 지향해야 할 원리를 법이념에 비추어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임. 적당한 예일지 모르겠으나 효율성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 관계 등. 국민이 가장 추구해야 될 법이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이 필요할 것임. 법에 대한 인식도 설문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됨.
-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이나 법의식조사의 계속성을 위해서는, 문항마다 질문의 이유 성격을 간단하게 해설을 부가하는 것이 좋을 듯함. 그리고 설문조사의 기법상 물을 수 있는 문항 수가 있으므로, 우선 설문시간에 따른 문항수를 확정하고 2-3배의 풀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됨. 이때 기본설문과 시의성이 있는 설문, 구체적 사례 설문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함.
- 국민의 법생활에 있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라든가, 경찰, 검사, 판사, 법무사, 변호사, 혹은 법과대학생 등 법률상담의 경험에 대한 빈도수, 이유 등을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임.
- 법정립기관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태도에 있어 헌법재판소가 포함되어야 할 것임.

- 구체적인 제도의 폐지나 대폭적 개정이 문제되는 법률들이나, 가장 잘 지켜지지 않고 사문화된 법률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해서 설문 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예: 경범죄, 혼인빙자 간음죄... 그 외 다른 토론문 참조
- 예컨대 28면의 설문에서는 각 항목마다 점수화하여 평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임.
- 예컨대 29면에서와 같이, 경제사범, 환경사범, 탈세, 부정부패, 부동산투기 등 내용이 중복되거나 용어의 어려움 때문에 선택의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문을 보다 평이하게 풀어쓰고 내용의 구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2008 설문분야별 설문문항에 관한 의견

정 태 호
(경희대학교 법학과 교수)

I. 사회변동과 가치관의 변화

1. 가족구조의 변화

- 귀하 가정의 경우 가족공동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1) 아버지(남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
- 2) 어머니(아내)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
- 3) 부모(부부)의 공동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
- 4) 가족 모두의 의사를 종합하여 이루어진다
- 5) 기타

2. 직장질서의 변화

- 직장의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한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무조건 들어준다
- 2) 가능한 한 들어준다
- 3) 가능한 한 거절한다
- 4) 무조건 거절한다

3. 여성의 지위 변화

-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그렇다
- 2) 그렇지 않다

나) 다음은 어떠한 경우에 여성이 가장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정치참여
- 2) 재산상속
- 3) 취업 및 승진
- 4) 가정에서의 역할
- 5) 기타

4. 여성의 법률상 지위 변화

-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법률상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그렇다
- 2) 그렇지 않다

나)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여성관련법 규정 자체의 미비 또는 결함
- 2) 여성의 권리의식 부족 또는 법생활의 불철저
- 3) 남성의 이해 부족 또는 이기심 팽배
- 4) 남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
- 5) 기타

II.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

1. 법에 대한 인상

- 귀하는 “법”이란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 1) 공평하다
- 2) 민주적이다
- 3) 엄격하다
- 4) 편파적이다
- 5) 권위적이다

(불공정하다)

- 귀하는 법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반드시 필요하다
- 2) 어느 정도 필요하다
- 3) 별로 필요하지 않다
- 4)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법규범력의 좌표와 법의 존재가치에 대한 판단

법규범력의 좌표

- 법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국가통치를 위하여
- 2) 사회질서유지를 위하여
- 3) 사회개혁을 위하여
- 4) 분쟁해결을 위하여
- 5) 범죄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 6)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의 존재가치에 대한 판단

- 만약 우리사회에서 법이 다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차라리 나을 것이다
- 2)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 3) 불편할 것이다
- 4) 사회가 전혀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3. 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법의 선택

-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해결합시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 1) 바람직하다
- 2) 합리적이다

- 3) 몰인정하다
- 4) 불쾌하다

4. 탈법행위자에 대한 평가

- “법을 어기면서도 잘 사는 사람은 대체로 능력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 1) 전적으로 동의한다
- 2) 대체로 동의한다
-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Ⅲ. 국민의 법생활

1. 법생활과 법적 경험

법인지경로

- 귀하는 생활법률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 1) 신문이나 TV(인터넷)을 통해서
- 2) 주위 사람들로부터 듣고서
- 3) 책이나 잡지를 보고서
- 4) 학교에서 배워서
- 5) 사건을 겪고 나서
- 6) 정부홍보물을 보고서

법인지욕구

- 귀하는 신문에 실리는 법령에 관한 기사를 자세히 보십니까?

- 1) 자세히 본다
- 2) 대충 본다
- 3) 거의 보지 않는다
- 4) 전혀 보지 않는다

- 귀하는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행정관청의 민원상담실 · 법률구조공단 · 소비자보호단체 등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상담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1) 자주 있었다
- 2) 한두 번 있었다
- 3) 전혀 없었다

- 귀하는 고소장, 고발장 또는 행정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서류(진정서 등)와 같은 법률서류를 직접 작성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1) 고소장, 고발장을 직접 작성해 본 적이 있다
- 2) 고소장이나 고발장은 아니더라도 민원서류를 직접 작성해 본 적이 있다
- 3) 직접 작성해 보지는 않았으나, 다른 사람을 통해 작성해 본 적은 있다
- 4) 작성할 일이 있었지만, 어려워서 작성하지 못했다
- 5) 작성할 일이 전혀 없었다

- 귀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편드를 가입할 때) 보험계약서나 통장의 뒷면에 있는 규정(약관)을 보십니까?

- 1) 자세히 본다
 - 2) 대충 본다
 - 3) 보지 않는다
- 귀하는 주택, 상가의 매매, 임대차 또는 일반상거래에 필요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약서를 검토하십니까?
- 1) 매우 그렇다
 - 2) 다소 그런 편이다
 - 3) 별로 그렇지 않다
 - 4) 전혀 그렇지 않다
- 법조문이나 법률용어가 딱딱하고 생소하여 어렵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 1) 그렇다
 - 2) 그렇지 않다
- 법교육
- 다음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단계에서의 법교육에 대한 물음입니다.
- 가) 귀하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법 교육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잘되고 있다
 - 2) 대체로 잘되고 있다

- 3) 별로 되고 있지 않다
- 4) 전혀 되고 있지 않다

나) 귀하는 보다 적절한 법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부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국민의 권리 · 의무와 국가조직에 대한 지식
- 2)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생활법규
- 3) 법을 **사용하는** 능력의 향상
- 4) 준법정신의 함양을 위한 올바른 인간상 정립
- 5) 기타

다) 귀하께서 학교교육을 통해서 배웠거나 현재 배우고 있는 법 관련 지식이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도움이 된다
- 2)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 3)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4)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 만약 귀하께서 법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생긴다면, 다음 중 어떤 분야를 가장 배우고 싶으십니까?

- 1) 국민의 권리 · 의무에 관한 헌법 분야
- 2) 부동산, 금융거래 등 민사 분야
- 3) 각종 범죄에 대한 고소 · 고발 등 형사 분야
- 4)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률적 처리 분야
- 5)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노동 · 사회복지 분야

- 6) 건설·건축 관련 분야
- 7) 소득세·상속세 등 조세 분야
- 8) 전자상거래, 통신비밀보호 등 인터넷 관련 분야
- 9) 혼인, 상속 등 가족법 분야
- 10) 기타

□ 법적 경험

- 귀하는 금전관계로 소송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나의 권리실현을 위해서는 소송을 꺼릴 이유가 없다
- 2)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번거롭다
- 3) 법정에 서는 것은 그 자체가 불명예스럽다
- 4) 기타

- 귀하는 면·동사무소나 구청에 갈 경우 어떻게 해야 일이 잘 처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원칙대로 하면 된다
- 2) 무조건 잘 부탁한다고 해야 한다
- 3) 압력을 넣어야 한다
- 4) 적으나마 뇌물을 주어야 한다
- 5) 기타

- 귀하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상식적으로 살면 된다
- 2) 법대로만 하면 된다

- 3) 법과 관련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 4) 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한다
- 5) 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어겨야 한다

□ 법지식

- 귀하는 법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어렵다
- 2) 대체로 어렵다
- 3) 별로 어렵지 않다
- 4) 전혀 어렵지 않다

- 법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법률용어가 딱딱하고 생소해서
- 2) 법 내용이 실제 생활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아서
- 3) 법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없어서
- 4) 법에 무관심해서

- 귀하는 스스로 법에 관한 전반적 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잘 알고 있다
- 2) 어느 정도 아는 편이다
- 3) 그다지 잘 알지 못하는 편이다
- 4) 거의 모른다

- 현행 민법은 시집간 딸과 부모를 모시고 사는 아들 중 누가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 1) 시집간 딸
- 2) 부모를 모시고 사는 아들
- 3) 똑같다
- 4) 잘 모르겠다

2. 준법정신과 권리의식

준법정신

○ 준법질서

-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그렇다
- 2)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매우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나)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 1) 법의 절차가 복잡하고 자주 바뀌니까
- 2) 법이 불공평하므로
- 3) 법의 집행의 집행이 엄격하지 못하므로
- 4)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5) 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편리하므로

다) 다음 중 누가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정치인
- 2) 공무원
- 3) 법조인
- 4) 교육자
- 5) 기업인
- 6) 근로자
- 7) 종교인(종교지도자)

8) 대학생(모두 직업명칭인데, 대학생을 선택지의 하나로 한 이유는?)

9) 농어민

라) 귀하께서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 1) 법을 잘 몰라서
- 2) 번거롭고 불편해서
- 3) 법을 지키지 않아서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 4) 법을 지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모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 5)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 6)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 사적 모임에서의 규칙 준수

- 다음은 동창회·계 등의 모임에서 회칙이나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 귀하가 가입한 동창회·계 등의 모임에서 회칙이나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왜? 선택지를 두 개만?)

나) 만약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친한 사이라서

2) 벌칙이 약해서

3) 이익이 없어서

4) 생활이 바빠서

5) 기타

○ 분야별 법준수 정도

- 다음의 각 분야에서 법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정치분야

2) 행정분야

3) 경제계

(용어의 불명확성, 통일성 결여? 차라리 기업인)

4) 노사관계(노무분야? 노동자 또는 사용자?)

5) 교육계

6) 교통질서

7) 행락질서

○ 고발정신

- 귀하가 무단횡단을 하거나 담배꽂초를 버리다 단속반에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 1) 법을 어겼으므로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
- 2) 재수가 없는 경우라고 생각한다
- 3)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으나 법적 처벌은 지나치다
- * 선택지 선정이 문제가 있음, 특히 2

- 만약 도둑이 이웃집 담을 넘는 것을 보았을 경우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당연히 신고한다
- 2) 경우에 따라 신고한다
- 3) 두려워서 신고하지 않는다
- 4) 귀찮아서 신고하지 않는다
- 5) 이웃과 합세하여 잡는다

○ 가장 시급히 퇴치하여야 할 범죄

-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퇴치하여야 할 범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

- 1) 부정부패
- 2) 탈세

3) 부동산투기사범

4) 환경사범

5) 경제사범 **(* 1, 2, 3은 모두 경제사범의 일종 아닌가?)**

6) 기타

나)

1) 성폭행

2) 조직폭력배

3) 마약사범

4) 강·절도사범

5) 음주운전

6) 기타

다) 범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피해자 및 일반시민의 철저한 신고정신

2)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3) 관계당국의 엄격한 법집행 및 처벌강화

4) 가정과 사회에서의 건전한 시민 교육

5) TV·신문 등 대중매체의 선도적 역할

6) 기타

* 범죄의 원인이 되는 사회·경제적인 구조의 개선을 선택지로 넣어야!

□ 권리의식

- 만약 국민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악법도 법이니까 지킨다
- 2) 제재가 두려워서 지킨다
- 3) 적극적인 방법으로 시정을 요구한다
- 4) 악법이니까 지키지 않는다

*** 선택지 3을 소송, 청원과 같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 불량품(전자제품, 식품 등)을 샀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한 번 산 것이니 어쩔 수 없다
- 2) 끝까지 따져서 바꿔온다
- 3)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한다
- 4) 재판을 하여 손해배상까지 받아낸다

- 만약 귀하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해주는 대로 만족한다
- 2) 치료비만 받는다
- 3)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까지 받는다
- 4) 고소하여 법대로 처리한다

*** 선택지 1을 “가해자가 해주는 대로 만족한다”로 명확하게**

3. 법의 사용능력 및 분쟁의 해결방법

□ 법의 사용능력

- 만약 국민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악법도 법이니까 지킨다
- 2) 제재가 두려워서 지킨다
- 3) 적극적인 방법으로 시정을 요구한다
- 4) 악법이니까 지키지 않는다

*** 권리의식에 관한 설문과 동일!!!!**

- 귀댁의 자녀가 같은 또래의 아이들과 다투다가 상처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한다
- 2) 치료비를 받는다
- 3)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

*** 설문에 문제가 있음: 입원을 해야 할 정도의 큰 상처를 입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상처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는 선택지를 추가해야

□ 분쟁의 해결방법

-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해결합시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 1) 바람직하다
- 2) 합리적이다
- 3) 몰인정하다
- 4) 불쾌하다

*** 위에도 같은 설문 존재**

- 만약 귀하의 가족 중 누가 사람을 때려서 경찰에 붙잡혀 갔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피해자나 그 가족을 만나 합의하겠다
- 2) 검찰이나 경찰계통에 아는 사람을 찾는다
- 3) 변호사를 찾아간다
- 4) 법의 해결에 맡긴다

IV. 법정립기관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태도

1. 법정립기관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태도

-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 1) 법의 절차가 복잡하고 자주 바뀌니까
- 2) 법이 불공평하므로

3) 법의 집행의 집행이 엄격하지 못하므로 (문구 중복)

- 4)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 5) 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편리하므로

- 다음 중 누가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정치인
- 2) 공무원
- 3) 법조인
- 4) 교육자
- 5) 기업인
- 6) 근로자
- 7) 종교인
- 8) 대학생
- 9) 농어민

*** 동일 설문 존재**

- 다음의 각 부분이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1)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3) 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4)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가) 국회나 정부에 서 법령을 만 들 때				
나) 행정관청에서 법을 적용할 때				
다) 파출소나 경찰 서에서 법을 적용할 때				

라) 검찰에서 법을 집행할 때				
마) 법원에서 판결 을 내릴 때				

- 국회의원이 만든 법은 국민인 우리가 만든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그렇다
- 2) 대체로 그렇다
- 3) 별로 그렇지 않다
- 4) 전혀 그렇지 않다

- 귀하는 면·동사무소나 구청에 갈 경우 어떻게 해야 일이 잘 처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원칙대로 하면 된다
- 2) 무조건 잘 부탁한다고 해야 한다
- 3) 압력을 넣어야 한다
- 4) 적으나마 뇌물을 주어야 한다
- 5) 기타

2. 사법개혁에 대한 태도

-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 2)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 3)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4)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국민의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바람직하다
 - 2) 바람직하지 않다
- * 선택지를 4개로 늘려야**
- 이른바 “로스쿨” 도입과 관련하여 현행 법조인양성방식에 대하여 많은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귀하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현행방식유지(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선발)
 - 2) “로스쿨” 방식도입(대학교육을 통한 법조인선발)
 - 3) 기타
- * 이미 결정된 것에 맞게 설문을 바꿔야!!!**
- 2008년부터 일부 형사재판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배심제 재판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귀하는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반드시 필요하다
 - 2) 어느 정도 필요하다
 - 3) 별로 필요하지 않다
 - 4) 전혀 필요하지 않다

- 만약 귀하께서 배심원으로 선발되어 참여 요청을 받는다면, 배심원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1) 있다
- 2) 없다

*** 선택지 추가 요: 사정이 허락하면 가급적 참여할 것이다.
수당을 충분히 준다면 참여할 것이다.**

- 배심제 재판 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배심제에 대한 홍보
- 2) 국민들에 대한 법교육
- 3) 관련 제도의 정비
- 4) 법조계의 인식 전환
- 5) 기타

V. 현행 법제에 대한 견해

1. 현실에 맞지 않는 법

- 다음 중 가장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정치에 관한 법
- 2) 행정에 관한 법
- 3) 형사처벌에 관한 법
- 4) 경제에 관한 법
- 5) 조세에 관한 법

- 6) 노사관계에 관한 법
 - 7) 농어촌에 관한 법
 - 8) 친족상속에 관한 법
 - 9) 기타
- **현행 민법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동성동본의 결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동성동본의 결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찬성한다
 - 2) 현행 민법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그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
 - 3) 한국적 전통으로 보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3) 자식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2. 정치관계법

가) 우리 선거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잘 지켜지고 있다.
- 2) 보통이다.
- 3) 잘 지켜 지지 않는다.
- 4) 위법이 극심하다.

나) 선거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그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선거법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이다
- 2) 선거사범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3) 당선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4) 유권자의 의식이 낮기 때문이다.

다) 우리 헌법은 귀하에게 무엇을 연상케 합니까?

- 1) 집권자의 편의를 위해 개정된 정치적 도구
- 2)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규범체계
- 3) 공동체 존립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의 규범적 확정
- 4) 약자 보호 체계

라) 귀하는 우리 헌법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 1)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 2) 개인의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 3) 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 4)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협력과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 5) 국가의 개인이나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마) 소득양극화 극복이 시대적 과제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는 양극화 극복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처방 중에서 어떤 방법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 1) 경제성장을 가속화한다.
- 2) 소득이 많은 자들로 하여금 세금을 많이 내게 하여 경쟁에서 뒤쳐진 자를 돕도록 한다.
- 3) 경제적 약자가 양질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가급적 양질의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한다.
- 4) 소득양극화는 개인적인 능력의 차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해서는 안된다.

바) 귀하는 복지사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복지사회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거둬서 실현하여야 한다.
- 2) 복지사회를 구현하려면 세금을 많이 거두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어서 국가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 3) 내가 세금을 더 내더라도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지사회로 가야 한다.
- 4) 경제성장만 되면 복지사회는 저절로 되므로 세금을 낮추어야 한다.

사) 귀하는 우리나라의 정당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돈 먹는 하마이면서도 정쟁만 일삼기 때문에 없애야 할 존재다.
- 2) 정쟁만 일삼지만 그래도 민주주의를 위해 불가결한 존재이므로 관용해야 하는 조직이다.
- 3) 양질의 정책을 생산해 내므로 국가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조직이다.

아) 귀하는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정당이 양질의 정책을 생산하는 것을 돕기 위해 국고보조를 강화하여야 한다.
- 2) 정쟁만을 일삼는 조직에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낭비이다.
- 3) 국고보조를 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고보조가 없으면 정당과 정치인이 더욱더 부패할 것이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계속해

야 한다.

4) 정당의 민주성과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고보조를 폐지하여야 한다.

3. 노사관계법 위반의 책임 소재

-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노사관계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가) 요즈음 노사관계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 2)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 3) 별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 4) 전혀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나) 노사관계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사용자
- 2) 근로자
- 3) 정부
- 4)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4. 환경오염의 규제방향

- 귀하는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기업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환경오염의 방지 및 복구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켜야 한다
- 2) 벌금보다는 징역 등 체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 3) 규제보다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치중하여야 한다
- 4) 기타

2008 국민법의식조사연구에 대한 의견서

조 상 균
(전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1. 사업방향에 관해서

- 구체적인 사업방향 및 연차별 사업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언급하는 것이 조심스러우나 최소한 한국, 일본, 중국의 법의식을 비교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국민의 법에 대한 의식을 보다 더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사업목적과 관련하여 종래 실시되었던 법의식조사와의 비교검토에 주된 목적을 둘 것인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내용으로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후자를 취하더라도 전자의 내용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사업목적을 정확해 해야만 이후 조사방식이나 설문내용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우선 고려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기본 시각에서 ‘법’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부분 즉 판결이나 사법부에 관한 인식도 대상으로 확대시켜야 하는 것인지에 관해서 먼저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설문에 대해서

가. 사회변동과 가치관의 변화

- 법의식을 조사하는데 앞서 가치관의 변화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나, 직장질서의 변화나 여성의 지위 변화, 여성의 법률상 지위 변화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은 조금 진부하다는 느낌이 들며, 굳이 여성의 문제만을 특화시켜, 여성의 지위 변화와 여성의 법률상 지위 변화를 나누는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히려 성매매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다만, 이전의 법의식조사와 관련하여 비교검토하려는 의도라면, 새로운 가치관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인권의식 변동에 관한 사항도 함께 검토했으면 합니다.
- 구체적으로 법의 목적과 관련하여 소수자 보호에 관한 의견과 소수자 보호 가운데 가장 시급하고 현안인 소수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설문을 추가하는 것도 적당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결혼이주자, 새터민 등)

나.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

- 귀하가 법을 지킨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인지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ex) 국가에 의해서 강제되기 때문에, 법의 내용은 항상 올바르게 때문에...등
- 판결의 내용이나 판결문에 관한 인식과 정서 부분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다. 국민의 법 생활

- ‘법지식’을 묻는 조항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예로 들어서
 - ex) 대한민국 헌법을 읽어 보신적이 있는지? 있다면 헌법의 최고법으로서의 위치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헌법에 담겨져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등에 관한 설문
- ‘법지식’을 묻는 조항에서 4번째 설문인 ‘현행 민법상 시집간.....’설문은 너무 진부한 내용으로 현재 상식에 가까운 내용임으로 다른 설문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 ‘법의 역할’이라는 항목을 새롭게 신설하여
 - ex) 법이 범죄예방에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역할을 다하고 있다.전혀 그렇지 않다)
 - ex) 법이 원만한 가정생활유지에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 ex) 법이 국가를 통치하는데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 ex) 법이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데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 법에 관한 TV를 어느 정도 보는 지에 관한 설문
 - ex) 솔로몬의 해결 등

라. 법정립기관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태도

- 법적용을 통해서 본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를 파악하는 설문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 ex) 사회지도층 인사에 관한 부분, 경제범죄 부분
- 사법개혁에 관한 설문 중 로스쿨과 관련된 내용은 이미 시행중에 있으므로 삭제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배심원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는 설문은 현행 법상 무작위 선출방식에 의해서 선정되고, 선정되어 정당한 사유 등이 없이 불출석 할 경우 과태료에 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른 설문으로 대체해야 할 것으로 보임.

마. 현행 법제에 관한 견해

- 좀더 다양화 할 필요가 있으며
- 노사관계법 위반의 책임 소재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가 등의 단순한 질문보다는 구체적인 법이 노사의 분쟁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지,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법이 어떻게 규제를 해야 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2008 국민법의식조사연구 자문의견

최 환 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 조사방향에 대한 의견

-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종전에 수행한 조사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그 동안의 법의식의 변천과정을 비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설문문항의 개발에 있어서도 비교,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되, 최근에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한 설문을 추가 개발하여 종전의 조사연구결과의 비교와 더불어 최근에 쟁점사항에 대한 법의식이 보완적으로 조사될 수 있도록 연구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을 듯함

2. 구체적인 설문내용에 대한 의견

- 종전의 조사연구결과 이후에 변화된 법제도를 설문내용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가족등록부제도 등 구체적인 법제도의 내용에 대한 국민 의식을 물어봄으로써 최근의 법제도의 변화에 대한 의식구조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화, 행정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 등 구체적인 법집행에 대한 의식조사도 병행되면 좋을 것 같음

3. 조사결과활용도 측면에 대한 고려 필요

- 조사결과를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설문개발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조사결과가 이렇다 정도에 그친다면 연구의 의의가 퇴색됨. 따라서 3개년의 조사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라 매년 조사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설문문항을 개발하여야 할 것임.
- 예를 들면, 조사결과를 일본 등 외국의 법의식조사와 비교연구한다던가 하는 방안이 있을 것임.

2008 국민법의식조사 설문 항목에 대한 의견

한 영 수
(법제처 법제관)

1. 전체적 의견

우선, 설문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앞서 국민법의식 조사의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제연구원의 이번 법의식조사는 단순한 1회성 여론조사와는 다른 성격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설문조사항목도 그때 그때의 필요에 따라 구성하기보다는 연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일반화된 것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도별 비교가 가능한 기본분야에 관한 설문분야와 시의성에 따라 추가하여야 할 설문분야를 구분하여 설문항목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분야에 관한 설문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이를 지수화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설문항목 중에 추가하거나 보충하였으면 하는 사항

- 다음 사항을 설문항목에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 인터넷 상의 법률문화에 관한 사항
 - 기업과 민생활동과 관련된 규제의 강도에 관한 사항(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의 정도, 규제완화에 대한 의식, 규제의 체감 정도)

도 등)

3. 설문항목 간에 중복이 많다.

4. 설문방식에 관하여...

- 4-1. 설문내용이 다소 전문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로스쿨에 관한 최근의 논의와 관련된 설문의 경우 대다수의 응답자가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질문내용을 법률서비스 시장에 대한 만족도, 변호사 수의 확대 필요성 등에 관해 질문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어떨지? 배심제의 경우에도 사전 설명이 더 필요한 것 아닌지?
- 4-2. 설문항목이 현재 시점에서 법에 대한 인식을 주로 묻고 있는데, 과거와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졌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보충하면 어떨지? 예컨대, 법집행기관의 공정한 법집행이 과거에 비해 좋아졌다고 보는지 나빠졌다고 보는지?에 관한 질문 방식 등

5. 기타 설문항목상 바로 잡을 것들